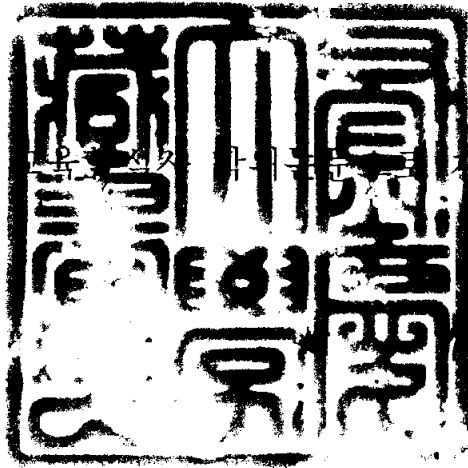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학교 법 교육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지도교수 하 봉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

배 한 욱

배한욱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6월 일

주 심 정치학 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 박사 하 봉 규 (인)

위 원 정치학 박사 김 진 기 (인)

목 차

목 차	i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
ABSTRACT	vi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II. 법의 개념 및 법 교육

1. 법의 개념	5
가. 의의	5
나. 법의 어원적 개념	6
다. 법의 이념	7
2. 동·서양의 법문화	15
가. 서양의 준법의식	17
나. 우리나라의 준법의식	19
3. 법 교육	24
가. 법 교육의 원리	29
나. 법 교육의 필요성	31
다. 법 교육의 목표 정립	33
라. 사회과 법 교육의 법의식 신장 방안	39

III.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법 교육의 현황과 실태

1.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교육 이념과 교육목표 . . .	43
가. 제 8학년의 법 교육의 의미	44
나. 제 8학년의 교과서 내용	45
2. 제 7차 교육과정의 법 교육 현황	
가. 법 교육에서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	50
나. 학교에서의 법 교육의 문제점	51
다. 법적 기능 신장과 학급 자치법원	55
 IV. 학급 자치법원 운영을 통한 법 교육 증진방안	
1.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방안	
가.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의의	60
나.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필요성	61
다. 재량활동의 구성	61
라. 재량활동의 시간의 활용방안	62
마. 재량활동 과정을 통한 학급 자치활동의 연간 계획 . . .	64
2. 학급 자치법원 운영	
가. 학급 자치법원의 교육적 의의와 효과	67
나. 학급 자치법원 운영	72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82
2. 제언	85
 참고문헌	87
부록	

부록-1 (학생회 자치법원 규정)	91
부록-2 (학급 자치법원 규정)	95
부록-3 (학급 자치법원 일지)	97
부록-4 (설문지-학생)	98
부록-5 (설문지-학부모)	100

표 목 차

<표 1>	사회 생활과 법규범(대단원)	45
<표 2>	법의 지배와 정의 (중단원)	46
<표 3>	사회 생활과 법-질서 (중단원)	48
<표 4>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중단원)	49
<표 5>	재량활동의 구성	62
<표 6>	재량활동의 영역, 활동 내용 및 배당시간	63
<표 7>	재량활동과정을 통한 학급 자치활동의 연간 계획	66
<표 8>	학급 자치법원 운영 후 민주 시민의식의 변화 . . .	81

그림 목차

<그림 1>	법 교육을 통한 법치사회 실현	27
<그림 2>	법 교육목표의 체계도	35
<그림 3>	학급 자치법원 운영도	75
<그림 4>	학급 자치법원의 배치도	76
<그림 5>	학생회 자치법원의 배치도	78
<그림 6>	학생회 자치법원의 운영도	79

A Study on the Alternative Model for Middle School's Law-related Education

Han Wook Ba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f a man wishes to live in a society, he need to observe social morality and the laws of that society. Thus it is said by scholars that "Where there is a society, there is a law".

Recently, a lack of basic law-abiding spirit, greed, individualism and group selfishness including illegal acts have become prevalent in our society as well as a disturbance in crease in the number of younger criminals.

This thesis advocates that the best way not to disturb public order is to educate this aspect through schooling. Middle school education, which an courages students to consider their society, is important, with this in mind, this thesis focused on law education in middle schools.

This thesis already suggested the necessity and meaning of law schooling, and theoretically law through records and two hypotheses.

1> An administrative plan for a class of an autonomous court during the discretionary time of students in the 7th educational policy

2> An administrative plan for a class of an autonomous court incorporation the progress of class work; social lives and patterns in laws as a part of the 8th grade curricula

Thus in this study, we have tried to verify the above hypothes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to operate the autonomous court. Before making up the court, autonomous regulations should be drawn up in advance. In the processing of drawing up such prescriptions written through free debating, the class should learn current technical legal terms.

For the class teacher, he or she not only needs to give some advice but must not be too closely involved, that is, he or she should be a observer or a guide. Such advice should not be biased. It should also be borne in mind that the super-ordinate article (law) must not be infringed by the subordinate article (law). Once regulations are drawn up and announced, the students have to take an oath to obey and the staff of the class needs to collect examples of legal violations.

It is a general rule to hold the court on a fixed day; however, it is possible to call a meeting or convene emergency summons on a special day. The number of meetings does not matter. With this research, I hope the students can improve their disposition as democratic citizens and can be interested in law education. In consequently, they can help to improve society and school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Man is Social Being).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을 해야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저마다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소에 관계없이 그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사회가 있는 이상 반드시 규범이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사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우리사회 생성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우리사회는 기초적인 준법의식의 결여, 물질만능주의,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와 각종 탈법적인 사례가 늘어만 가고, 이러한 현상들은 공포화 되면서 연령층도 점점 낮아져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비하고 청소년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법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하고, 그 중요성은 한층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주로 사회과를 중심으로 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의식을 갖추게 하는 데 있으며, 학생들이 우리사회와 그 기저에 있는 가치를 이해하며 사회문제와 갈등을 좀더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잘못되거나 획일적인 사고를 극복하여 우리사회와 법제도 그리고 정부의 활동 등에 참여하려는 의욕 및 능력

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은 공정한 내용을 지니고 공정하게 집행되며 모두가 준수할 때 비로소 참된 법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법은 단지 권력자의 명령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는 예로부터 법이 지니는 강제 수단으로서의 성격만을 인식해 온 데 그 주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법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법 교육이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 규범론에 치우치거나 기존 체제 및 제도의 무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 교육의 극히 일부분만이 법적 분쟁 및 해결 등 법 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할당됨으로써, 민주 시민적 자질 함양에 필요한 법 지식 및 기능을 갖추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법적 무력감과 기피 경향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법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의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법 교육의 중요성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법 교육은 단편적인 개념중심의 내용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체계적인 절차 중심의 법 기능이나 가치, 태도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법 교육 방식 또한 수업의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객관적 지필 평가 및 상대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무엇보다도 인지적 영역의 단편적인 법 지식 중심의 평가는 법 가치,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생의 개성과 적성을 무시하는 획일성을 초래하였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의 고등정신 능력과 진

보적 성장 발달 및 학습활동 전반에 대한 가치는 평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주체적 활동에 의한 법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강의식 혹은 주입식의 법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방법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모델로는 법리적 개념학습, 법리적 탐구학습, simulation, 역할놀이(role playing), 사례 연구 방법(case study method), 현장학습, 모의재판, 자원인사 초빙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 외에 미국의 법 교육에서는 가치 명료화 훈련, 법률 어휘 훈련(vocabulary exercise)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학급 자치 법원 운영은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법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판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쟁점을 명료화하는데 용이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법이 추구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탐색,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 자치 법원을 활용하거나 제 8학년 교과서의 진도에 맞추어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토론·토의 문화가 향상될 것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능력도 향상될 것이며, 법문화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에서 학생 스스로가 지켜야할 규칙을 학급회를 통하여 만들어보고, 이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토론·토의문화를 배우게되며, 학급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규칙을 지켜나가는 습관을 기를 때 학교는 명랑하고 즐거운 장으로 변할 것이며, 학급은 모범적인 학생들로 변해 갈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과 과정의 법 교육 부분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교육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제 7차 교육과정의 제 8학년 사회과 법 교육 부분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법 교육의 증진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8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중학교 법 교육의 증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학급자치 법원 운영과

나. 제 8학년 사회과 법 교육의 범위에 보조를 맞춘 학급 자체 법원 운영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학급 자치 법원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토론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중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법 교육의 개선책을 살펴보고 중학교 법 교육의 증진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법의 개념 및 법 교육

1. 법의 개념

가. 의의

법의 개념이란 법이라 총칭되는 사회현상의 궁극적 목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법의 개념을 우선 형벌로 생각하고 법은 처벌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법이란 형식적으로 법전에 적혀 있는 법조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실질적 내용은 인간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법은 국가 내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이끌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으로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가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

역사적으로 법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의 노력이 있었으나, 법의 개념을 알아간다는 것은 법철학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따라서 법이 개념에 관해서 법철학적으로 다소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법이 실제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규범인지를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플로베르(G. Flaubert)는 “법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모른다(Le Droit, on ne sait pas ce que c' est)” 고 이

1) 국제정치학자 Hans J. Morgenthau는 Politics Among Nations에서 사회규범(Social Norms)은 도덕(Morality), 관습(Mores), 그리고 법(Law)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command(명령)과 sanction(제재)이란 공통성을 지닌다고 언급한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New York: Alfred A. Knopf, 1985), Chap. 15.

야기하였고, 칸트(I, Kant)는 “하나의 정의에로 이르는 것은 아름다우나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직도 법률가는 법의 개념에 관한 하나의 정의를 찾고 있다”고 말한 것인지 모른다.²⁾

법학이 오랫동안 법의 이념 찾기에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치된 학설이 확립되지 않았다. 그것은 법의 이념을 탐구하는 대다수의 학자가 정의의 본질을 찾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여 온 것도 한 이유이다. 또 법의 이념을 하나로 보려는 견해와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의 대립도 지속되어 왔다.³⁾

나. 법의 어원적 개념

원래 법(法)자의 정자(正字) 내지 고자(古字)는 ‘법(灋)’이다. 한자는 본래 뜻글자이기 때문에 간혹 법(灋)의 약자인 법(法)을 들어 ‘물’(水)과 간다’(去)를 조합해서 “법은 물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의 본래의 의미는 물 수(水)와 해태 채(鵄) 그리고 갈 거(去)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물 수(水)는 수면과 같이 평평함을 뜻하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 공평 혹은 형평을 의미한다. 둘째, 해태 채는 시비 선악을 가리는 전설적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 정의를 상징한다. 셋째, 갈 거(去)는 악을 제거하는 응징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 강제성을 의미한다.⁴⁾ 그리고 헤브라이어의 thorah는 <가르침>을, 그리스어의 dik는 <관습>, nomos는 <배분>을, 라틴어의 ius는 <명령>, lex(프랑스어의 loi)는 <수집>을, 프랑스어의 droit는 라틴어의 directum에

2) 홍기갑(1999), 『신헌법원론』, 서울: 도서출판 어화, p.17.

3) 김원규(2000), “법의 이념과 사회정의”,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

4) 한건우(1999),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서울: 신영사, p.50.

연유하며 <정서(整序)된 것>을, 독일어의 Recht는 <권리(權利)>, 같은 독일어인 Gesetz 및 영어의 law는 <놓인 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명령, 계율, 강제력을 의미한다고 한다.⁵⁾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는 오늘날의 법이라는 뜻으로 율령(律令)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여기서 율이란 오늘날 법체계로 보면 형법을 의미하고, 령(令)이란 행정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순수한 우리말의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순수한 우리말로 법에 해당하는 것은 ‘본보기’, ‘본때가 있다, 없다’ 할 때의 ‘본’ 이라는 말이다. 이 ‘본’은 지상에 있으되 꼭 있어야 할 모습대로 있는 상태, 그래서 남의 모범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⁶⁾

다. 법의 이념

법의 개념적 복합성은 법의 존재 이유, 이념과 직결된다. 법의 이념이란 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 즉 법이 실현해야 할 궁극적 가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의 이념은 법의 근원에 존재하면서 법의 형성이나 실현의 지표가 되는 것, 법의 존재 근거를 말한다. 법은 맹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은 이념과 결부시켜 이해하지 않으면 법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의 목적을 탐구하는 법의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다.⁷⁾

법의 이념은 법의 근원에 존재하면서 법의 형성이나 실현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법을 법답게 하는 것, 즉 법의 개념에 내재하는 보다 근원적·내

5) 야후 대백과사전, 법의 어원(<http://kr.yahoo.com>).

6) 한견우, 앞의 책, p.51.

7) 윤소연(2002),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용적·실제적인 법을 말한다. 법의 개념은 법의 외형적·형식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법의 목적과 법의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법의 이념 또는 목적의 문제는 법철학의 사명이며 현대 법학의 과제로서 고대로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법의 이념을 정의, 공공복리, 공동선, 행복, 사랑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하여 왔으나, 상대주의적 가치철학의 법 이론을 전개한 독일의 법철학자인 라드브루흐(Radbruch)의 법이념 3요소설 즉,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현대의 법학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오늘날의 통설적 견해이다.⁸⁾

(1) 정의

로마의 법학자 켈루스(Celus) 이래로 법은 ‘정의와 형평의 술(術)’이라고 법과 정의는 고대로부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법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예부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법에 공통되는 목적으로 정의(justice)를 드는 데에 이설이 없다. 전통적으로 정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 또는 각자에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의는 인간사회의 최고의 가치, 절대적 가치이고 궁극적인 가치이며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 상태이다.⁹⁾

서양에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정의를 삼라만상의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 후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정의에 대한 객관적 각도를 부정하고 주관적 상대주의를 대표하였다. 그리스의 철

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1991), 『신 법학개론』, 서울: 법문사, p.55.

9) 최종고(1991), 『법학통론』, 서울: 박영사, p.54.

10) 송광섭, 앞의 책, p.28.

학자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는 ‘강자의 이익’을 정의로 보고 정의와 권력을 동일시하였으며, 로마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와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정의라 하였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법과 정의를 같게 보고 법과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최초의 이상주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은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 하였다. 그는 덕을 지혜 · 용기 · 절제 · 정의의 넷으로 나누고, 정의의 본질이란 공동생활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정의야말로 최고의 덕이라 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행하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¹¹⁾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개념을 윤리적 입장에서 고찰, 최초로 이론화한 학자이다. 그는 정의를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덕이라 하고, 동시에 정의는 단순한 개인의 덕이 아니고 각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도덕이라 하고, 정의에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다고 하였다. 평균적 정의(rectificatory justice)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산술적 · 절대적 평등의 원리이다.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조화하는 정의로서, 단체생활에 있어서 각인은 제각기 상이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가치의 차이에 따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비례적 · 실질적 평등의 원리이다.¹²⁾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의론에 의하면 민법 · 상법과 같은 사법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형법 · 세법과 같은 공법 혹은 노동법 · 경제법 · 사회보장법과 같은 사회법은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것이

11) 윤소연, 앞의 논문, p.34.

12) 김원규(2000), “법의 이념과 사회 정의”,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개인주의와 단체주의의 양 측면을 고려하고 그 이념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서 후세의 사회적 정의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세에는 법철학이 카톨릭의 일부분으로서 발전하였는데 교부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정의를 사랑과 같은 것으로 보고 유일신을 신봉하는 것이 정의라 하였고, 스콜라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지혜·용기·절제·정의를 4대 덕목으로 들고,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 일반적 정의는 지상의 모든 덕망을 포괄함에 대하여 특수적 정의는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동양의 정의 사상은 정의라는 말보다는 ‘의’ 내지 ‘의리’ 라는 말이 즐겨 사용되었으며, 법치주의보다 예치주의·덕치주의가 더 높이 평가되고 법규범보다 도덕규범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도덕규범은 인·의·예·지를 기본으로 하였다. 예주법종(禮主法從)·덕주형보(德主刑補)라는 말과 같이 법은 도덕이나 예 규범의 실천을 위한 보조물에 불과 하였다.¹³⁾

유가나 도가들이 법을 경시한데 비해, 법가는 인격주의를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는데 그들은 사회진화에 관하여 현저히 현실주의적인 견해를 취하여 법의 우월을 주장하였다. 법가는 법의 목적이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법의 적용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여 유가의 계급적 법 적용에 반대하였다. 이처럼 법치주의를 강력히 주장한 법가도 법의 이념으로서의 평등이나 정의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법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법의 효용을 중시했을 뿐 정의 개념의 수립에는 뒤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의 이념은 과거에는 동·서양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오늘날 정의의 개념은 세계 각국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정의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으로 파악하는 것

13) 김원규, 앞의 논문, pp.7-8.

이 일반적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인권의 존중을 드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요컨대, 법은 정의를 내용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법이 정의를 내용으로 함으로써 정당한 법이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의는 ‘바른 것’이며, 바르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니다.¹⁴⁾

(2) 합목적성

합목적성이란 법이 그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에서 합목적성이란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제정되어 실시되는 원리’이다. 법에 있어서의 정의의 이념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법의 내용을 일반화한다면, 법에 있어서의 합목적성의 이념은 법의 내용을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이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는 형식적·추상적 이념에 불과하므로,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할 표준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이 합목적성인가 하는 문제는 단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지향해야 할 문제이다.

인간이나 국가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치관의 종류에는 라드브루흐에 의하면 개인주의와 단체주의 그리고 문화주의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¹⁵⁾

개인주의는 인간을 궁극적 가치로 지향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국가를 포함한 단체는 개인보다 하위의 가치에 서게 되며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존중되도록 평균적 정의의 실현이

14) 윤소연, 앞의 논문, p.35.

15) 송광섭, 앞의 책, p.31.

법이 지향하는 목적인 것이다.

단체주의(초개인주의)는 단체(예: 민족, 국가)를 최고 가치로 신봉하고 개인의 인격은 단체의 부분으로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존중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단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체의 입장에서 개인들에게 비례적 평등을 실현시키면서 배분적 정의에 중점을 두게 된다.

문화주의(초인격주의)는 개인도 단체도 아닌 인간이 만든 문화 작품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태도이다. 개인과 국가는 이러한 문화를 창조해나가는 범위 안에서만 부차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이 견해는 실제로 많은 정당이나 국가가 지향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이다. 어쨌든 문화주의에서는 배분적 정의에 의한 차별은 인정되지만, 그 차별의 기준은 문화업적의 창조에 공헌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체계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며, 어떤 입장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인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념과 확신의 문제에 귀착한다.

법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합치하는 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의 목적은 국가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에 있다고 하며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내건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주의적 정의의 실현을 내건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주의적 세계관, 상대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0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옛날 개인주의 시대에는 불가침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사회정의의 구하는 20세기에 와서는 상대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은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본위로 하는 개인성과 공공의 복지라는 단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성의 양면성을 띠고 있으며, 이것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 즉 사익과 공익의 대립·모순관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로 법의 합목적성을 통해서 가능 한 것이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 23조 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2조)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인간인 자기와 타인의 공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그것이 법의 목적에 맞기 때문이다. 법에는 상대적 세계관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 지향하는 목적이 있으니 만큼 이에 모순되는 법은 그 법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3)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안전 또는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법의 명확성·부동성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변동 없는 상태를 보장하는 법의 불변성을 말한다. 이는 법의 내용이 정의와 합목적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한다.¹⁷⁾

16) 김철수(1993), 『헌법 개설』, 서울: 박영사, p.141.

법의 안정성은 실정법의 내용을 당위로서 수용하고 법의 존재상태를 인정하는 이른바 법의 실정성을 요구한다. ‘부(否) 정의로운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는 피테의 표현이 시사하듯 법의 1차적 기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있다.

법은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법의 안정성이 보장되면 사회질서의 안정도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법이란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 변경되어서는 국민이 행동의 지침을 잃게 될 것이요, 사회도 안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개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그 사회의 질서유지와 직결된다. 민법·상법은 재산권보호나 거래질서의 안정, 가족생활의 유지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고 헌법도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를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또한 분쟁해결의 방안으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라트브루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¹⁸⁾

첫째,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셋째, 법의 실행은 실제로 확실히 행해져야 한다.

17) 법적 안정성은 특정의 질서가 그 가치와 안정성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향유, 영속적인 메커니즘으로 정착하는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의미한다. 권위주의(독재) 국가의 경우 사법체제의 정치화(혹은 왜곡)를 공통적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사회적 위상은 곧 민주주의의 척도이기도 하다. 하봉규, “예외 국가의 정치체제적 성격 고찰,” 『현대사회』 (1988/여름호), pp.97-98.

1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앞의 책, p.59.

넷째, 법은 국민의 법의식에 맞아야 한다.

(4) 법이념의 상호관계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 법이념은 상호 모순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는 것이 되고 합목적성을 강조하면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악법도 법이다.’라면서 준수를 강요하게 된다.¹⁹⁾

법이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 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의 이념은 자유와 권리,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 헌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의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자연법 원리에 입각하여 기본권의 천부인권설을 인정하고,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2. 동·서양의 법문화

19) 송광섭, 앞의 논문, p. 35.

20) 김철수, 앞의 책, p.124.

법이란 문화적 산물이다. 법은 항상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사회의 양상 변화와 상이함에 비례하여 다양한 모습을 띄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법규범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선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되는 문화란 각각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인 문명과는 달리 문화는 미개한 사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발달된 문화나 열등한 문화란 있을 수 없다.²¹⁾

문화는 기본적으로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화는 결코 정체된 개념이 아니며, 비록 변화의 결정적인 동인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뿐 가변적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문화적인 상호 영향력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법이란 이러한 문화적인 차별성과 가변성을 전제로 생성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에는 법규범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즉 동서양의 법규범이 다르고, 중세의 법이 현대사회의 규범과 다른 것은 그 사회와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법규정을 생성 또는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가지는 문화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1) 류인모(1999), “한국인의 정서와 법치”,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집』 제 2집, pp.45-46.

가. 서양의 법제사와 준법의식

서양의 최초의 성문법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1901년 프랑스의 드 몰간(De Morgan)지휘하의 페르시아 탐험대에 의해 수사(Susa)에서 발견된 tablet(타블렛)이다.²²⁾ 이 법전에는 모두 282개조의 법이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보복주의, 준사형주의(準私刑主義), 불평등원칙(귀족·평민·노예), 고의와 우발의 무차별을 들 수 있다.

그리스인의 교과서가 호메로스라면, 로마인의 교과서는 12표법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로마인들이 정치면에서 행한 업적 가운데 법률은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 로마법은 약 천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하였다. 그것은 본래 그리스의 법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로마시의 시민법(jus civile)에서 출발하여 로마 제국내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jus gentium)으로까지 확대 발전하였다. 이러한 법전화 과정을 뒷받침한 정신적 기초는 인간의 이성, 상식 및 보편적 인간성 등에 입각한 자연법(jus naturale)이었다.²³⁾

22) 메소포타미아의 법제조직은 매우 일찍 발달하여 수메르인 이래의 관습과 법이 집성되어 기원전 2500년경 이후에는 등기(Dungi)왕에 의해 성문법으로 체계화되었다. 이 법전은 단편적으로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그 후 함무라비 법전 속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하순(1991), 『서양사 총론』, 서울: 탐구당, pp.27-28.

23) 일반적으로 자연법의 특색은 (1) 그것이 항구불변한 보편적이라는 점, (2) 모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법률이 거기서부터 유래한다는 점, (3) 따라서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정법보다 우월한 고정법이라는 점, (4) 그것이 모든 인간의 이성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며 양심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 이성의 법이라는 점, (5) 항구불변의 보편법이라는 개념이 인간본성상의 권리라는 개념에 까지 연결된다는 것, 즉 자연법이 자연권에 연결된다는 점등이다. 로마의 자연법사상은 종교적 관습과 혼합된 신법(jus divinum)과 결합되어 유럽의 역사를 관통하였다. 예컨대, 16세기 후반 영토국가와 절대군주의 현상에서도 군주는 그의 영토에서 정치적 영역 문제 뿐 아니라 법의 문제에서도 최고였으며 인간이 만든 모든 법(all positive law)의 유일한 기원이며 그 자신은 복종(구속)되지 않았음. 그러나, (군주의 법적)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비잔틴제국 때의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527~565)법전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편찬되었는데, 528년부터 534년에 이르는 대 사업으로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유스티니아누스 법령집, 학설회찬, 법률학 강요, 신법집 등이다. 이 네 부분이 합쳐져서 「로마 시민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이라 알려지게 되었다. 거기에는 분명하고 간편한 형태로 로마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보존되었다. 그것은 후세의 법체계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민법의 바탕이 되어 있다.²⁴⁾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럽문화를 살펴보면 쉽게 동양의 자연환경과 구별해 볼 수 있다.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의 변화가 심하고 4계절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다. 본래 유럽은 지리상의 위치로 볼 때 한대지방에 속하지만 북대서양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기류가 편서풍이 되어 유럽대륙에 불어옴으로써 위도와는 무관하게 온화한 기후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람의 영향이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유럽의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무서운 자연이며, 재앙을 주는 자연, 즉 인간이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하여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인간의 삶의 형태도 투쟁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양식이 만들어지고 변증법적인 사고와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그 주축이 되는 틀을 이루게 된다.²⁵⁾

그러므로 자연환경이 척박한 서양에서는 집시문화의 전통을 골격으로 유목문화가 발달하고, 거주지를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생활이

연법과 신법에 제한되었음. 하봉규, 『한국정치와 현대 정치학』(세종출판사, 2002), p.17.

24) 차하순, 앞의 책, p.142.

25)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의 속성(Gestalt)에 관하여 쓴 최초의 학자인 Hippocrates(460?-377?: 그리스 의사, 해부학자)에 따르면 “Asia인들은 기후 상 큰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기후 때문에 유럽인들 보다 덜 호전적이다. 또한 아시아의 비자주적 사회제도에서 또한 이러한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피력함. David M. Potter, People of Plenty(Chicago: Phoenix, 1954), pp. 3-4.

중심적인 생활양식이 된다. 이에 따라 친구, 부부와 같은 횡적인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자연환경이나 여러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서양에서는 합리를 중심으로 한 법치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음식문화를 비롯한 사고방식과 제도의 형성에 있어 개체 중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되었다.

합리를 추구하는 법은 원래 유목민사회에서 통용되는 질서다.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니는 집사들에게는 모든 거래가 일회적이어야 하고, 금품을 주고받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주고받아야 한다.²⁶⁾

이러한 문화적 풍토로 인하여 철저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합리를 추구하는 법치는 전통적으로 제도와 형벌의 개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생활처럼 일반인들 사이에 젖어있다. 그러므로 준법의식 역시 이에 맞춰 높다 하겠다.

나. 우리나라의 준법의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법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내 것과 네 것을 잘 구별하지 않는 데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주거환경이 공동생활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법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법이란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도 되고, 그저 점잖은 사람으로서 덕이나 예를 소중하게 여기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선불리 법에 끼여들면 법의 굴레에 걸려 망신당하기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6) 류인모(1999), 앞의 논문, pp.48-49.

이러한 법에 대한 의식들을 계층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금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 돈과 권력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까운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못 가진 자의 경우에는 법을 무서워하는 것은 물론 ‘될대로 되라’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법이란 빈민을 학대하고 부자는 그 법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²⁷⁾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전통적 법의식은 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유교를 생활의 구도로 삼아왔다. 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예나 덕을 소중하게 여기며, 법보다 우선으로 문제해결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전통 아래서는 통치수단이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법의 기능을 예나 도덕적 윤리규범보다 하위개념으로 생각하고, 또한 법을 경시하게 되었다.²⁸⁾

이러한 연유는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자연 환경이 척박한 서양에서의 집시문화와는 달리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일정지역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동양에서는 자연스럽게 부자, 군신, 사제지간과 같은 종적인 인간관계가 보다 발달하고, 토지를 중심으로 한 권리의 개념이 계약을 중시하는 서양식의 사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합리를 중심으로 한 법치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동양에서는 윤리개념이 합리보다 앞서는 질서개념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서양에서는 음식문화를 비롯한 사고방식과 제도의 형성에 있어 개체 중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되고, 동양에서는 전체 중심적이고, 종합적인 사유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²⁹⁾

27) 한건우(1999), 앞의 책, pp.16-17.

28) 양승두(1982),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 법문사, p.358.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문물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가족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성향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결과로 나타나, 법질서를 무시하고 국가와 사회를 불신하는 풍조를 낳았다.

우리는 주변에서 무질서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길에 버린 담배꽂초, 마구 버린 쓰레기, 담벼락의 낙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침을 뱉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일도 흔히 볼 수 있으며, 택시, 버스 등의 승하차를 하며, 횡단보도를 두고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 빨간 신호인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자동차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변의 환경을 더럽히고 공중질서를 어기며 교통규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³⁰⁾ 최근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은 소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찾아보듯 법조 출신 대통령의 현행 (헌)법 무시 태도와 이에 따른 국회에 의한 탄핵 사태에 우리 사회가 보여준 반 법적, 비이성적 대응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유교적 영향이다. 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법이 예나 덕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보아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³¹⁾

29) 류인모(1999), 앞의 논문, p.48.

30) 한견우(1999), 앞의 책, p.18.

31) 유교에서는 만일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형벌로써 백성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백성은 다만 형벌을 피하려고만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염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로써 백성을 규제한다면 백성은 염치를 느끼게 될 것이며, 따라서 훌륭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고 예는 상민까지 내려가지 아니하고 형벌은 군자에까지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면, 유교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 식민지 통치의 영향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양의 근대적 법 제도는 17세기말 중국으로부터 조선의 사신들과 실학과 학자들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본의 침략을 말미암아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법은 주로 우리를 괴롭히는 제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법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³²⁾

셋째, 사회구조상의 문제이다. 한국사회는 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현대법의 원칙 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넷째,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에 있어서 법의 기능 혹은 역할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이해와 설득을 통한 사회변혁 내지 정책실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법의 강제력을 남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1960년대에 일어난 4·19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겪은 이후, 경제성장과 행정 우선주의의 정치로 치달으면서 법의 문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차적인 것으로 믿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준법의식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법대로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연줄이 없고 요령을 부리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고 믿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음성적인 수입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돈으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사랑·봉사·명예와 같은 가치들까지도 돈으로 확산하며 돈으로 유권자의 표까지 사는 금권만능주의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과소

32) 하봉규(2002), 『한국 정치와 현대 정치학』, 부산: 세종출판사, p.64.

비와 낭비의 풍조가 좀처럼 시들지 않고 있으며, 원칙과 절차에 충실한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또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는 도덕적 불감증과 배타적 이기주의가 퍼져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방관자로서 무관심하거나 불평하는데 익숙하다.³³⁾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곧이곧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말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들어 왔다. 그리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법 뒤에는 결코 평등한 것도 아니더라는 불평도 많다. 아마도 이것은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한 군사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군사정권의 통치하에서 우리는 권력이 법보다 우선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법을 지키기보다 줄을 잡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 문화적인 풍토에서는 준법의식을 꽃 피울 수가 없는 것이다.

준법의식은 행동을 위한 지침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로 파악되기 쉬우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법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현실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법을 지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손해를 보는 행위일 수도 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의 준법투쟁이라는 노동운동 전략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탈법을 묵인해 왔거나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⁴⁾

33) 안성조(1993), “시민정신의 함양을 위한 지방자치혁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4호』, 서울: 관학행정학회, pp.51-52.

34) 이문용(1994), “목소리 크면 득보고 법 지키면 손해본다”, 『한국인』 13권 9호,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pp.64-65.

3. 법 교육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평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규범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범이 바로 법 규범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사람들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칙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유지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이 관습이나 도덕 등의 사회 규범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고대나 중세 사회에서는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 관계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고 법률 제도가 정비되어 법치주의가 실현됨에 따라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범위가 점차 늘어났다. 특히,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에 의해 보호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 민주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하여 사회 질서 유지 및 정의를 실현하여 공공복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³⁵⁾

법 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시민성 함양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 교육 역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인식능력을 기르고 이를 전제로 바람직한 법적 문제 해결 능력과 법적 소양을 습득함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사회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법 격언에 “법 위에 잡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민주시민은 아무리 인격자, 건전한 상

35) 윤소연(2002),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식인이라 할지라도 기초적인 교양의 일부로서 법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정당한 주장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법률문제에서 올바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³⁶⁾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법 교육의 실시는 장차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활동하게 될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법적 사고와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³⁷⁾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각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따른 책임, 의무 관계의 성실한 수행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며 국가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주시민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 민주시민이란 기본적으로 법적 소양과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지적인 사회행위자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사회과 교육협의회(NCSS)에서 제시한 훌륭한 시민의 자질이나 특성 24가지 요소 중에서 프리만 부트(Freeman Butts)는 13가지 요소³⁸⁾가 자유, 평등, 기본적 인권, 법률 및 정치체제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36) 유백렬, 앞의 논문, p.9.

37)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38) ① 만민에게 기회가 평등하다는 신념

②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적 가치관 구비

③ 법과 법 집행 기관(예, 경찰서, 법원, 기타 사법기관 등)에의 존중심

④ 민주주의 원칙을 수용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의 행동이나 정부의 정책·실천내용을 평가·판단하기

⑤ 선거권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실천하기

⑥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각하고 실천하기

⑦ 공공복리를 앞세우고 존중하기

⑧ 헌법상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사항임을 알기

⑨ 재산권을 존중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여 재산권 행사상의 규제 준수하기

⑩ 공정한 사업의 실천과 공정한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지적하고 이 13가지 요소는 법 교육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시민의 요건 13가지는 자유, 평등, 기본권 인권, 법률 및 가치체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고 이들은 시민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다섯 가지 주요이념 자유, 정의, 평등, 재산, 권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법 교육의 역할이 시민교육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고 있다.³⁹⁾

따라서 법 교육은 이상과 같은 민주시민 자질요건을 형성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법 교육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학생들로 하여금 법적 사고 방식을 형성하고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구비하게 하여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갈등 상황이나 쟁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법치주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곧 법치주의 사회이므로 모든 개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보장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법 교육을 통해 법에 관한 기초적 소양과 법적 문제해결능력,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함양을 통한 훌륭한 시민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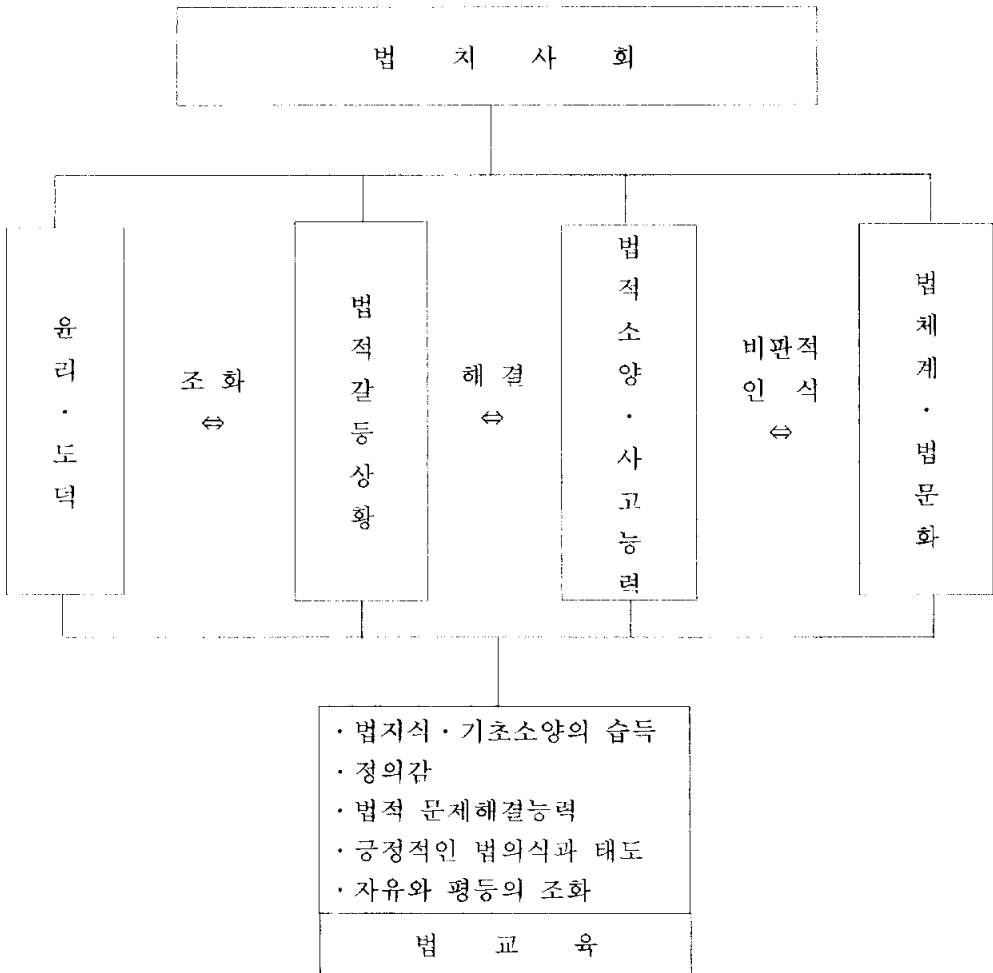
⑪ 정부의 조치로 필요시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경쟁적인 경제체제의 유지

⑫ 책임 있는 가족 성원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해 공민적 책임을 이행하기

⑬ 세금의 납부를 지역사회 봉사료 인식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39) 유백련, 앞의 논문, pp.11-12.

<그림 1> 법 교육을 통한 법치사회 실현⁴⁰⁾



이와 같은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페레이라(C. Pereira)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첫째, 시민적 자질 육성에 법 교육이 기여한다는 점이다.

법 교육은 입헌 민주 국가에서 교양 있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통해 청소년

40) 유백렬, 앞의 논문, p.11.

들에게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제공하여 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법제도·정부·입헌주의에서의 시민적 자질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게 된다. 또한 법 교육을 통해 시민 참여, 의사 결정, 비판적 사고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비행 예방에 법 교육이 기여한다는 점이다.

적절한 법 교육의 운영은 책임 있는 시민적 자질과 태도를 육성하게 되어 성공적으로 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비행 및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빠져들지 않으며 비행·범죄 발생 시 당국에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과에서의 학생의 흥미를 촉진한다.

법 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법률 생활과 관련지어 이루어질 때 학습의 흥미를 크게 촉진시켜주며 교수 학습 활동에서의 다양한 상호 작용(예, 소집단학습, 모의 재판, 시뮬레이션, 사례 연구 등)은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을 긍정적·사회적으로 제고시켜 나간다.

넷째, 폭이 넓고 깊이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 제공에 기여한다.

법 개념, 법적 사실은 역사·정치·경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의 근원·기능·절차·역할·법적 원리(예, 정의, 평등, 권위, 자유, 질서 등)의 학습을 사회과 전 교과 과정에 관련시킴으로서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 인식의 세계를 보다 정밀하고 풍부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과 교육 속에 법 교육이 차지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⁴¹⁾

① 법 교육 통해 학생들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법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② 법 교육은 기초적인 법적 개념과 원리 등 법 지식을 습득시키고 법적

41) 최인화, 앞의 논문, p.17.

사고에 입각한 기능과 태도를 길러 민주법치 사회에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한다.

③ 법 교육을 통하여 법체계와 법 절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존경심을 기르며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④ 법 교육은 특정한 사회 구조 속의 법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원한다.

⑤ 학생의 법사회화를 의도적으로 조성·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인 법의식을 제고시키고 바람직한 법문화형성에 이바지한다.

⑥ 학생들에게 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행위를 예방·방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생활 태도를 육성한다.

법 교육은 실용적인 법 지식의 습득이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존재(sein)의 학습과정임과 동시에 바람직한 사회상,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하는 당위(sollen)의 교육이라는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교육은 법 체계와 실제 생활과의 관계를 지을 수 있는 법의 원리와 기초적인 법 지식을 이해하여 법적 사고력과 사회 문제를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기르는 국민 소양 교육의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⁴²⁾

가. 법 교육의 원리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은 공정한 사회를 이

42) 윤소연, 앞의 논문, p.19.

루기 위한 법의 지배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의 기본적 성질, 역할을 학습시켜야 할 것이다.⁴³⁾

첫째, 법은 우리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의무를 신장시켜 준다.

둘째, 법적 관계(legal system)는 법 위에 군림하는 인간이나 집단이 필요 없는 나라로 만들어준다.

셋째, 법은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을 해결하여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모델과 절차를 제공해 준다.

넷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개념은 정의·법의 함목적성·법적 안정성인바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혹은 긴장 관계를 구성하기도 한다.⁴⁴⁾ 이러한 법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는 법 교육은 학습자에게 법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시키며, 법적 개념이나 지식을 배양해 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그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또는 법적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바람직한 태도나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은 기본적인 법 개념을 이해한 바탕 위에 법적 문제 상황에 자신의 법적 소양을 응용할 수 있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되 도덕 및 윤리적인 접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법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인간상은 민주 시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적 지식과 민주적 태도 그리고 법 지식을 기초

43) 한국교원대학교(1997),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p.517.

44) 오관중, 앞의 논문, pp.19-20.

로 법적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법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 체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능력, 법을 포함한 사회 규범의 준수에서 오는 민주적 정치 참여 능력, 준법 질서 의식의 형성 등이 법 교육의 결과로 도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나. 법 교육의 필요성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은 전통적인 교육내용의 하나로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나라들이 초등교육 기관에서부터 사회 또는 도덕과목을 통하여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준법성 함양과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한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과 교육에서 사회현상의 인식을 꾀하여 왔다면, 법의 인식을 위한 법 교육도 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법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⁴⁵⁾

첫째,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들의 사회 생활의 대부분은 법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적 관계는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은 매년 제정되는 법률의 증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둘째,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은 노동문제, 교통문제, 공해문제, 범죄문제 등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사회현상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가 법률문제도 법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45) 윤소연, 앞의 논문, p.16.

셋째, 오늘날 우리 사회는 준법 태도의 쇠퇴와 함께 범죄의 증가, 범죄의 지능화 등으로 점차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법 교육의 필요성을 개인,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측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법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각종 사회 규범에 의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은 거의 예외 없이 강제력과 실효성을 수반하는 법규범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법은 국가 사회 질서유지의 기본이 되며, 일생동안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구조에 있어 틀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일면은 규제적인 면과 함께 다른 면에 보호 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의 국민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회가 아주 많아졌는데 국민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편이어서 법이 자기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률적으로 아무리 권리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장되고 말 것이며 그것은 자기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 사회적 측면

현대사회는 전문화, 조직화, 다양화함에 따라 인간의 사회생활도 복잡해지고 따라서 복지국가 지향과 더불어 국가의 기능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법질서도 세분화되고 복잡 방대해짐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러한 법질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의 생활이 종교·도덕·관습·풍습·친족관계 등 법 이외의 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면이 상당히 많았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통적인 관념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법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할 생활면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 교육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정치적 측면

법치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오늘날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준법여하가 정치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 이에 법 교육은 법치국가와 법문화 형성을 위한 가장 필요한 수단이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지속적 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올바른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적으로 법치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다. 법 교육의 목표 정립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의 일반목표는 “사회생활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이를 활용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각과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지게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른다.”라고 적고 있다.⁴⁶⁾

그러므로 법 교육의 궁극적 목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기본권 보장 및 정의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46) 유백렬, 앞의 논문, p.14.

두어야 할 것이다.

넬슨(J. Nelson)과 미첼리스(J. U. Michaelis)는 법 교육의 일반적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법적으로 조화 있는 생활을 정당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실용적인 법 지식·정보를 획득하기

둘째, 법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기능을 개발하기

셋째, 정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력을 높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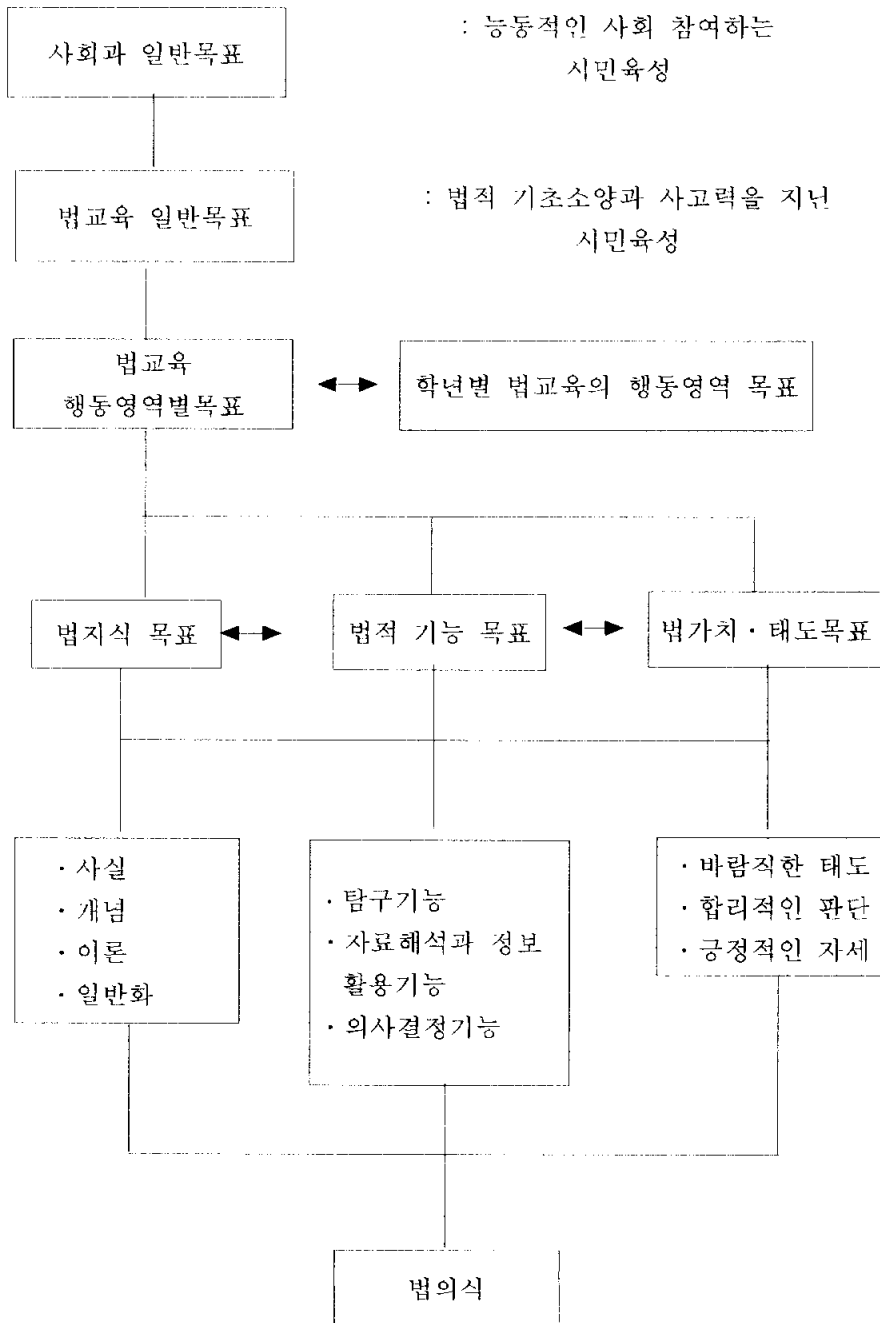
넷째, 시민생활에의 책임 있는 참여를 고무시키기

이를 위해 법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법적 주제가 무엇인가를 유념하고 학생들에게 법적인 생존기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법 교육을 통해 획득된 법 지식은 법적 문제 해결기능과 법적 태도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배려가 따라야 하며 중·고교학생들에게 법적 지식의 인식과 법적 기능 및 태도, 가치관에 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법 교육목표의 체계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질 수 있다.

<그림 2> 법 교육목표 체계도⁴⁷⁾



47) 오판중, 앞의 논문, p.21.

이러한 법 교육 일반목표로부터 행동영역별(지식, 기능, 가치·태도)법 교육 목표를 추출할 수 있는데 권병화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지식 목표

법적 지식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법적 지식의 습득 없이는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은 가치와 신념의 바탕을 제공하고 법적 기능을 발달시키는 수단이 된다. 학교 수업에서 습득된 법적 지식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참여와 지역 사회의 서비스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법 교육의 지식 목표는 법학적 학문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법 교육을 통해 법 체계의 구성요소, 법과 권위의 원천, 법의 원리와 목적, 주요 법적 절차, 법 체계를 지지하는 기본원리 등과 관련된 법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교육의 지식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 ① 법의 주요한 가치, 도덕, 철학적 기초를 분석할 수 있다.
- ② 법 제도의 발달 과정을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
- ③ 법 제도의 운영과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 ④ 우리 사회의 법적 쟁점들을 찾을 수 있다.
- 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분석할 수 있다.
- ⑥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 및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법리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⑦ 법의 주요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간의 상호보완 및 긴장관계를 이해하고 조화가 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2) 기능 목표

기능이란 반복적 수행에 있어서 어떤 일을 능률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기능은 개념학습, 정보의 탐색, 통찰을 통한 가치와 신념과 지식을 연결시켜 행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식과 학생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⁴⁸⁾

학생들은 이러한 기능의 습득으로 법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와 의문점을 규정하는 것을 배우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또한 법적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며,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구체화하며, 타협적인 방법을 취해 나감으로써 법적 갈등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상대방과 연합, 설득 및 협상을 통한 법적 참여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교육의 기능 목표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을 핵심으로 한다. 법 교육의 기능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 ① 관련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 ② 일상 생활에서 법 관련 문제들을 수집·분석할 수 있다.
- ③ 법적 기본 개념들을 자신의 용어로 기술할 수 있다.
- ④ 법적 상황들을 비교·대조할 수 있다.
- ⑤ 가설을 세울 수 있다.
- ⑥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 ⑦ 법 원칙들을 적절하고 유용하게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다.
- ⑧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⑨ 적법 절차에 따라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가치 및 태도 목표

지식을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며, 그 지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더욱 잘 활

48) 유백렬, 앞의 논문, p.17.

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된 태도와 신념·가치 체계를 기른다.⁴⁹⁾ 가치는 개인 및 집단 행동에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설정되고, 신념은 이러한 가치를 위한 의무를 나타낸다. 법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맹목적으로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이나 집단 행동과 관련된 가치나 신념의 역사적 근원을 학습하게 하고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학습할 주제와 현재의 법적 사건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수업 모형을 설정하여 법 교육의 가치 목표가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교육에서 민주적 태도란 사회 구성원간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한 규범이다. 따라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헌신하는 태도,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태도, 권위에 대한 성숙한 태도 등이 요구된다. 법 교육에 있어서 가치 및 태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 ① 당면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법적 문제에 대한 재 진술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도덕적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적절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윤리적인 정의와 원칙들을 매개로 하여 진리 추구에 자신을 몰두시킬 수 있다.
- ④ 사회변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변동을 파급시킴에 있어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준비할 수 있다.
- ⑤ 개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⑥ 사회적 권위 상정에 존중심을 보여줄 수 있다.
- ⑦ 사회 구성원의 권리 행사에 따른 자신의 신념을 보여줄 수 있다.

49) 오판중, 앞의 논문, p.24.

- ⑧ 자신의 의문제기에 재평가 및 수정할 수 있다.
- 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할 수 있다.
- ⑩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쉽 또는 다른 사람의 리더쉽을 수용할 수 있다.
- ⑪ 조직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공헌을 수용할 수 있다.
- ⑫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기본적 조건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다.
- 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구할 수 있다.

라. 사회과 법 교육의 법의식 신장 방안

법을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은 법적 지식이다. 지식은 사물이나 사상에 관한 인식 작용의 결과 형성된 개념체계로 사회 대상을 이해하거나 개인 또는 공공의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⁰⁾

그러므로 지식은 오랫동안 교수-학습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그 이유는 ①지식의 습득량이 늘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다고 믿었고, ②문제 해결이나 사고는 현실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지식은 문제 해결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검사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④지식은 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총명이나 지능의 척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⑤교육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지식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방법이 유일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받아 들여졌다.⁵¹⁾

50) 사회과교육연구회(1988), 『사회과 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p.220.

51) 유백렬, 앞의 논문, p.23.

그런데 지식의 습득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동시에 임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학습 지도의 기본적이고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기초적인 법적 지식으로서의 소양과 함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냐 하는 것과 학생 개인이 가지게 되는 법체계와 준법정신, 법의 가치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태도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즉, 정보나 지식은 새로운 사태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학생 개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올바른 가치와 태도로 변화될 때 바람직한 법의식을 지닌 훌륭한 시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교육에 있어서 법적 지식과 법적 기능, 법적 가치·태도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례를 통한 법적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법적 적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법적 문제 상황과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바람직한 가치·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 기능과 가치·태도는 개인이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적절한 정보나 방법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적 요소이며 이를 통해 법체계에 대한 민주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기능과 태도 학습은 학생들을 학습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여 학습을 실감 있고·흥미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지식 획득은 전이력이 높은 구조적 지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기능과 가치·태도 등의 습득 없이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 획득은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 탐구를 위해 학생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가치·태도를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사회 행위자는 지식을 얻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⁵²⁾ 지식 획득은 다양한

기능과 가치·태도의 숙달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도구적 역할을 한다.

법 교육에 있어서 법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⁵²⁾

첫째, 법 교육을 통해 획득된 법적 지식이 법적 문제해결기능과 법적 가치·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법 교육은 단순히 법적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법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법적 참여와 행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사례나 판례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여 법리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은 실정법상의 법 조항이나 이론체계의 학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법적 사례나 판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평가방법의 개선이다. 기존의 법적 지식위주의 평가에서 법적 지식과 법적 기능, 법적 가치·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평가체제의 변화. 전통적인 평가체제로는 학생들의 법적 기능이나 가치·태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평가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상대적인 서열을 매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학생의 선발이나 배치, 서열화를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양적으로 측정해온 평가방식을 양적 평가라 한다면, 그와 반대로 다소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

52) 교육인적자원부(2004), 『중학교 사회 2, 교사용지도서』, 금성출판사, p.214.

53) 유백렬, 앞의 논문, p.24.

고 교육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평가방식을 질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질적 평가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에 학생들의 기능이나 과정, 가치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고 교수-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개별적인 교수-학습과정과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적인 교수-학습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행평가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평가는 단편적인 지식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질적 평가로서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통적인 법 교육 교수-학습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안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법적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 교육은 학생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 교육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당면하는 법적 갈등 상황이나 법적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며, 법정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대안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태도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대안적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가 학급 자치법원인 것이다.⁵⁴⁾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되는 학급 자치법원은 정해진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법정 판결을 한다. 그 과정에서 집단 토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법적 현상이나 갈등에서 각 사례를 법리적으로 탐색·규명해 가는 방법이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고, 당면한 법적 갈등 상황과 논쟁점을 분석·비판하는 법적 사고력 및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54) 금정중학교(1999),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민주 시민 의식 함양”,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p.43.

Ⅲ.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법 교육의 현황과 실태

1. 제 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

중등학교에서는 2001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한 제7차 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⁵⁵⁾

- ①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②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⑤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등학교에서는 **교육목표를**⁵⁶⁾

- ①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 ②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익히며
- ③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히며
- ④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55) 부산광역시교육청(2003), 『제 7차 교육과정의 길라잡이』, p.4.

56) 교육인적자원부(2004), 『중학교 사회2, 교사용지도서』, 금성출판사, p.211.

법 교육 과목의 교육목표는 「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법 현상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법적 문제나 쟁점에 대하여 합법성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정의실현과 질서 유지라는 보편적 법이념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⁵⁷⁾

가. 제 8학년의 법 교육의 의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은 국민이 지닌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분관계, 공적 생활관계 및 노사, 경제 관계에 관한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은 곧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준법 생활은 시민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또한 권리 침해를 구제해주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제 8학년에서의 법 교육 단위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질서의 유지, 복지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이념과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고, 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법적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 및 절차, 사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와 준법의 자세를 기르도록 수록했다.

57) 오판중, 앞의 논문, p.59.

나. 제 8학년의 교과서 내용

제 8학년의 교과서 『Ⅶ. 사회 생활과 법규범』에서 중학교의 법 교육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중 단원으로써 법의 지배와 정의, 사회 생활과 법질서,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다.⁵⁸⁾

<표 1> 사회 생활과 법규범 (대단원)

주제(중단원)	소주제(소단원)	시간 배당	
		시간	차시
법의 지배와 정의	①법치주의 ②법의 이념	2	57~58
사회 생활과 법질서	①우리 생활과 법의 영역 ②사법의 의미와 기능 ③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3	59~61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①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②사회 생활과 준법	3	62~64

(1) 법의 지배와 정의

제 8학년 교과서 『법의 지배와 정의』 부문에서는 첫째, 국가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통치를 하며, 이를 ‘법치주의’라 한다.

58) 교육인적자원부 (2004), 『중학교 사회 2,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p.215.

둘째,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을 정하는데 법은 도덕이나 관습, 종교 등의 사회 규범과는 달리 강제성을 지닌다. 셋째,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원리와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통치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법은 정의의 원칙, 안정성, 합목적성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법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등의 주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법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의 법의 이념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⁵⁹⁾

<표 2> 법의 지배와 정의(중단원)

소주제명	시수	내 용
1. 법치주의	1	· 법치주의 개념 이해 · 법과 다른 사회 규범과의 차이점 · 법에 의한 지배의 필요성 · 실질적 법치주의
2. 법의 이념	1	· 민주적인 법 제정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 · 법의 형성 조건(법의 이념) · 정의 실현의 원칙 이해 ·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개념 · 법이념과 현실간의 갈등

59) 교육인적자원부(2004), 『중학교 사회 2,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p.216.

(2) 사회 생활과 법질서

사회 교과서 『Ⅶ. 사회 생활과 법규범』의 두 번째 중단원 「사회생활과 법질서」에서는 주요 핵심 내용으로 첫째, 법은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개인과 개인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사법, 그 중간적 성격을 띠는 사회법으로 나누고 있다. 둘째, 공법 영역에 속하는 법률에는 헌법, 형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행정법 등이 있고, 사법 영역에는 민법, 상법 등이 그리고 사회법 영역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등이 있다. 셋째, 사법(司法)은 추상적인 법 조항을 현실적인 법률 관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형사, 민사, 행정 등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 민사 재판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원고가 되어 피해를 준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형사 재판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와 기소의 절차를 거쳐 시작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급제도를 두고 있다. 여섯 번째,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구속 적부 심사제 등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민주 사회의 시민은 법의 내용과 적용 절차를 파악하여 어떤 행위가 위법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준법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⁶⁰⁾

60) 교육인적자원부(2004), 『중학교 사회 2,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p.222.

<표 3> 사회생활과 법 질서(중단원)

소주제명	시수	내 용
1. 우리 생활과 법의 영역	1	· 우리 생활과 법률 관계 · 공법과 사법의 차이점 · 사회법 등장 배경 · 법의 종류에 따른 법 조항
2. 사법의 의미와 기능	1	· 사법의 의미 이해 ·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 · 재판의 종류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구별
3. 사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1	· 민사와 형사 재판의 절차 - 심급제도 · 헌법 소원의 제기와 필요성 · 심급 제도의 필요성 · 사법 과정에서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

(3)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Ⅶ. 사회 생활과 법규범』의 마지막 단원인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첫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둘째,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등이 있다.

넷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는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다섯째,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와 질서가 무너져 공동체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이 위협받게 되며 불법행위의 처벌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 이는 결국 국민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준법을 생활화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고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⁶¹⁾

<표 4>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중단원)

소주제명	시 수	내 용
1.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2	· 천부인권설 - 국민의 기본적 권리 ·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 ·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 제한을 받게 되는가? · 권리와 의무의 관계 · 국민이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
2. 사회생활과 준법	1	· 우리 주변의 위법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왜 준법 생활을 해야 하는가? · 법을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 · 법을 지키기 위한 마음자세

61) 교육인적자원부(2004), 『중학교 사회 2,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p.224.

2. 제 7차 교육과정의 법 교육 현황

가. 법 교육에서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 교육의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상당히 현실감이 보완되었다고 생각된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도구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제 8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재산 상속법, 부동산거래법, 학교생활과 법, 여성과 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법, 국제분쟁법 등 실질적인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법 내용 분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⁶²⁾

첫째, 교과서 체계 구성상에 문제가 있다. 단원의 도입과 내용 전개, 학습 정리(학습 문제)의 체제가 헌법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학습자가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헌법 의식을 인식·경험하고 탐구하며 법적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헌법에 대한 가치·태도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제 6차 교과 과정보다 법 교육의 양이 축소되었다는 염려를 하게 된다. 특히 통치과정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의 삭제되었다. 물론 「법과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인 「정치」과목의 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소개가 있으나 여기서는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언급되어 있을 정도이다.

셋째, 기본권 내용의 분석에서 문제점을 추론해 보면 전체적으로 개념

62) 김이숙(2002), “중학교 법 교육의 실태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21.

위주로 서술되어 인권의 나열적 기술이 두드러지고, 기본적 인권의 확립 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술이 부족하다.

넷째,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내용이 매우 부족한 편이므로 정치에 대한 불신, 헌법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접근은 권리능력에서보다 행위능력 또는 행위무능력의 측면에서 더 많은 이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기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시키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헌법 조항을 기준으로 기본권보장의 원칙규정(헌법전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등), 생존권적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가정·보건법), 참정권적 기본권(공무원 선거권, 공무원임권, 국민투표권),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등으로 구별하여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여덟째, 생명권과 관련하여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안락사, 낙태, 사형제도 등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아홉째,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문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문제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이 아쉬운 일이다.⁶³⁾

나. 학교에서의 법 교육의 문제점

63) 오관중, 앞의 논문, p.60.

법 교육은 주로 사회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8학년(중학교 2학년)의 경우 약 20쪽 정도의 분량을 주어진 8시간의 시수로 지도해야 한다. 법 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성 함양과 법의식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⁶⁴⁾

중학교 법 단원의 경우 현대 사회의 사회규범으로서 강제성을 띤 법규범이 필요하다는 점, 법과 도덕의 비교, 법의 적용과 집행, 사법과 공법, 천부인권과 법의 지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권리의 침해와 구제,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물론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사법과 공법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나의 권리를 인식하고 침해된 권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 점, 사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 점등은 법 교육의 목적이나 효과적인 법 교육 방법에 부합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의 법 교육은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⁶⁵⁾

첫째로는 교육 목적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교육 과정도, 교과서도, 교사도 법 교육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확실히 드러내 주지 않고 있다. 중등학교의 법 교육은 대학의 법학개론을 쉽게 풀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행사하며 남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둘째로, 법 교육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법 교육은 단순 암기 위주의 지식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민법, 상법,

64) 교육인적자원부 김정(2004), 『중학교 사회 2 교과서』, 금성출판사, pp.180-200.

65) 송현정(2001), 『법치주의와 교육- 학교로 가는 전문가』, 서민과 진화사, pp.51-52.

형법, 근로기준법, 소비자보험법 등의 다양한 법들, 민사재판, 형사재판, 여러 가지 기본권들 등의 주요 내용을 암기할 뿐이다. 사례가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흥미를 위한 보기일 뿐, 그 사례를 통해 권리의 차원에서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학생들은 법이 우리에게 가깝지도 않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내용의 측면에서, 법 교육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의무에 대한 설명이 강조된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현재의 법 교육은 인권교육의 측면보다는 헌법교육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 국민의 의무를 나열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으며, 기본권이 살아 있는 권리가 아니라 책 속에 있는 죽은 권리고 기억될 뿐이다.

넷째로, 학교의 법 교육은 인권의 천부인권 사상으로 설명하고,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권리를 설명함으로써, 인권이 시민의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획득되어 온 결과물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현재 우리의 권리가 무엇이다’라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울 뿐이지, 내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침해당하고 있으며, 침해당한 권리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학교의 법 교육은 현재의 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 준법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국민의 약속이며, 사회가 변하고 약속이 바뀌면 법은 새롭게 제정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의 제정과 집행, 적용을 비판, 감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법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법적 문제해결력을 발휘토록 하려면 학습자가 당면한 다양한 법적 갈등 상황이나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하며 법적 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때, 개념 중심의 단편적인 법 지식을 암기·주입하는 수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법 교육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교사 중심의 법 교육 수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⁶⁶⁾

첫째, 교사 중심의 수업 전개가 주는 한계이다. 다인수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교사 중심의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사 중심의 수업은 그보다 더 큰 학생의 참여와 흥미를 저하시키고, 이것은 법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게 되며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단편적인 개념중심 법 지식을 암기·주입시키는 수업에서 주는 한계이다.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교과 내용을 단편적인 개념중심의 법 지식보다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절차중심의 법 지식이나 법 기능, 법 가치·태도 중심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암기식으로 교육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역시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신장을 저하시키며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시켜 법 교육을 등한시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교사중심 법 교육 수업을 그 동안 정치교육차원에서 법 제도적인 접근법에 주로 의존하여 법 교육 독자적인 수업전개논리보다는 정치교육 수업전개논리의 일부분으로서 의존하였기 때문에 교사중심의 단

66) 윤소연, 앞의 논문, p.83.

편적인 법 지식 암기위주 수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법 교육 수업에 있어서 학습자의 주체적 활동에 의한 법적 문제 해결능력과 사고력을 신장시켜야 하겠고, 전통적인 교사중심 수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안적인 다양한 수업방법 모색이 있어야 하겠다.⁶⁷⁾

다. 법적 기능 신장과 학급 자치법원

법 교육은 법적 사고력 형성과 법적 소양을 육성함으로써 학습자 및 사회가 당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이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법적 기능 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법 교육은 사회과 교육 영역에서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정치기구와 권력구조 중심의 법제도적 접근, 사법영역보다는 공법영역 중심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 와서 개인차원의 권리보장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교과서 속에서도 현실 법 생활의 법적 쟁점들과는 다소 거리가 먼 실정법상의 법 조항이나 이론체계의 학습이 중심을 이루며 법적 사례나 판례의 법리를 탐구하는 기회부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법 교육이 권리보장교육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며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사회는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복잡한 법률 관계망의 형성과 새로운 법적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적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발휘토록 하려면 학습자가 당면한 법적 갈등상황이나 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67) 김만기(1996), “중학교 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

확인하고 분석하며, 법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대안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나 사례 혹은 판례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다양한 수업 방법 등을 법 교육 교실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법 교육을 통해 획득된 법 지식이 법적 문제해결기능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법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법적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참여와 행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법적 기능 영역 습득과 발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전통적인 법 교육 수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로 사례 학습 방법인데, 이 연구 방법은 특정한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깊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즉, 법적인 갈등 상황이나 사건 등에 관계하여 여러 가지 법적 견해와 판례를 통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규명하는 방법인 것이다.

생활 주변에서 선택한 사례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 교육 시간을 학생들의 생활영역에서 발견되는 사례로 시작한다. 사례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이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 분쟁이 보기보다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법이 정적인 규율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동적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방법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중학생이라는 수준에서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둘째는 현장 학습 방법이다.⁶⁸⁾ 법원, 경찰서 등 법 관련 기관 방문과 같

68) 이상규, 앞의 논문, p.52.

은 학교 밖의 활동으로, 법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법을 바르게 보면서 범죄 예방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장 학습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원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방법과 수업 결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방문 학습 방법인데, 전문가(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등)외에도 비 법률가인 시 의원, 공무원, 부동산 중개인, 소비자 보호인, 기자, 광고 전문가 등과 사적 접촉을 통하여 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전문가를 수업에 초청하거나 수업 내용의 결정에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 교내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적인 경험을 듣거나 수업하는 것은 현장 학습을 교내에서 경험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하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상대방이 계획된 시간에 허락을 해주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넷째는 역할 학습 방법으로⁶⁹⁾, 연극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배우게 된다. 여러 관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적절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법질서의 대표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게 된다. 이 방법은 한가지의 소재를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끝으로 모의 재판 방법이다.⁷⁰⁾ 모의 재판은 재판 절차, 특히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 절차의 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기초가 되는 법의 분쟁 해결 메카니즘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하기 위한 수업 방법에 속한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방법으로 시대에 맞는 수업이 용이하다. 이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69) 전숙자(2001),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p.342.

70) 이대성, 앞의 논문, p.15.

위에서 언급한 대안적인 방법의 큰 흐름은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단편적인 지식중심에서 기능, 가치·태도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부합된 대안적인 법 교육 수업으로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방법에는 물론 각기 장, 단점은 있다. 여기에서는 학급 자치법원을 검토하였다.

학급 자치법원은 사법적 행위의 기능을 경험하게 하고 법정 절차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학급 자치법원을 통해 학생들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반대심문절차(The Adversary System)를 통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의 원칙, 입증기준,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및 쟁점 분석을 통한 법리 도출을 해봄으로써 법적 문제해결능력과 법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학급 자치법원은 흥미와 함께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준다. 학급 자치법원에 참여하고 재판절차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법정 절차를 학습하고,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법체계의 기초적 이해는 물론 심문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변론 능력을 기르며, 이미 학습된 법 지식을 실제 법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위와 같은 모의재판, 사례연구법, 역할 학습, 자원인사 초방법이나 현장 견학 등 프로그램들과 쉽게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학급 자치법원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근본적인 한계점(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여부)과, 둘째, 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법규의 제정에 따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셋째, 법체계의 차이(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 극복 가능성과,

넷째, 시간의 적절한 활용 문제와

다섯째,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미비 등이다.⁷¹⁾

71) 김만기, 앞의 논문, p.64.

Ⅳ. 학급 자치법원 운영을 통한 법 교육 증진 방안

1.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방안

가.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의의

제7차 교육과정에 설정된 재량 활동의 교육적인 의의를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²⁾

첫째, 학생의 다양한 흥미·적성·요구를 수용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의 교육과정 영역인 교과와 특별 활동에서 담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 활동을 탄력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이다. 즉, 교과를 심화·보충함과 동시에 교과와 특별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범 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역 사회 및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

72) 부산시교육청, 앞의 책, p.37.

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나.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필요성

제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시간 필요성은

첫째,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둘째, 단위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셋째, 학생의 선택권 확대

넷째, 인간 교육 강화

다섯째,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이상 구현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성 있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라는 흐름으로 볼 때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량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 재량활동의 구성

재량활동은 교과와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 교과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량활동이라는 이름은 교육 내용에 따라 붙여진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재량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재량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교과와 심화·보충, 그리고 창의적 학습으로 범 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의 단편적이고 초보적이며 외형적인 맛보기 활동을 심화·발전시키고, 고등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량과 주

제의 통합·분석력을 길러 주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자기 주도성과 깊이 있는 관찰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⁷³⁾

<표 5> 재량활동의 구성

재 량 활 동		시 간 배 당	
		중 학 교	고등학교(고1)
교 과 재 량 활 동	국민공통기본교과 심화·보충	연간 0~68 시간	4~6 단위
	선택 과 목 학 습	연간34~102시간	4~6단위
창 의 적 재 량 활 동	범 교 과 학 습	연간 34 시간	2단위(34시간)
	자기주도적학습		

라.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방안

재량활동 시간은 교과 재량활동 시간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으로 구별되어 지는데, 창의적 재량활동은 또한 범 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뉘어 진다.

범 교과는 여러 교과에 언급되면서도 통일된 체계가 없는 내용을 하나의 독립 영역으로 모아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범 교과의 편성은 전통적인 분과주의 원칙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교과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생의 흥미, 문제, 특정 제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⁷⁴⁾

73) 교육인적자원부(2001),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재(Ⅳ)』, p.10.

74) 교육부(2000),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p.95.

이러한 범 교과적 교육활동에 포함된 요소는 인간이 사회 환경이나 자연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로서 여러 분야에 공통으로 관련된 영역이다.

<표 6> 재량활동의 영역, 활동내용 및 배당 시간

하 위 영역	하위 활동	활동 내용	연간배 당 시간
교과 재량 활동	국민공통기본교 과심화·보충학 습	· 국민 공통 기본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술, 가정, 영어)의 보 충·심화 학습	68~102
	선택과목학습	·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독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과목	68~102
창의 적재 량활 동	범 교과 학습	·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보건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등 · 학교, 지역,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범교과 학습	34 시간
	자기주도적 학 습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 주제 탐구 활동 · 자유 연구, · 소집단 공동 학습 · 프로젝트 학습 · 체험학습 · 학교 행사 관련 활동 · 특정 영역 학습 · 학교 특수시책 구현 · 지역행사 관련활동 · 학교장, 교사, 학생이 만든 특별교육 프로그 램 · 기타 자율적 교육활동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보건교육, 에너지교육, 근로 정신함양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

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과 학교, 지역,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범 교과로 이 중에서 학급 자치법원과 관련 지어 학습되어 지는 것은 민주 시민 교육과 인성 교육 부문이다.

그리고 창의적 재량활동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제 7차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크게 강조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요체는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 지식, 태도 등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개별적 학습 활동을 추진하고 조성하기 위한 환경과 자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사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보다는 스스로의 학습 동기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탐색하는데서 만족감을 얻는 적극적 학습 활동이고, 그러한 활동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는 다차원적인 학습 전략이다. 여기에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활동, 자유 연구·소집단 공동 학습, 프로젝트 학습, 체험학습 등과 학교 행사 관련 활동, 특정 영역 학습, 학교 특수시책 구현, 지역행사 관련활동 학교장·교사·학생이 만든 특별교육 프로그램, 기타 자율적 교육활동 등이 있는데 학급 자치법원과 연계되어 지는 영역은 자유 연구, 소집단 공동연구, 특정 영역 학습, 학교장·교사·학생이 만든 특별 교육 프로그램 등에 해당될 것이다.

마. 재량활동과정을 통한 학급 자치활동의 연간 계획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학급 자치법원을 운영할 시에는

첫째, 학급 자치법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만들어 참고해 볼 필요

가 있다. 설문지 조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여 현재의 의식과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의 설문지 조사는 개인 신상이나 가정분위기를 먼저 조사하고, 학생 본인의 일탈 행위 여부와, 피해 여부를 조사해 봄으로써 학급 자치법원 운영 전·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⁷⁵⁾

학부모의 설문 조사는 학생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학생들이 가정에서 기초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제반 법규는 잘 지키는 편인지 조사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⁷⁶⁾

둘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일탈행위나 학급운영의 원활화에 저해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그 해결책의 방법으로 학급회를 통하여 자치 규약으로 만든다. 자치 규약을 제정할 때에는 많은 다양한 의견과 항목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한다.

셋째, 학급의 임원들을 자기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 분담을 한다. 학급의 임원들은 교칙과 학급의 내규를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교육되어 지는 것이고, 임원들이 내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학생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시킨다.

넷째, 법원의 조직을 설명하고 좌석 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교과서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조직을 설명하고 법원의 배석 구조에 맞게 좌석 배치를 설명한다.

다섯째, 결정은 공정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토론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게 한다. 모의 재판이나 T·V의 재판과정을 시청케 하고 필요하면 현장 학습의 방법으로 법원의 견학도 좋은 방법이다

여섯째, 학급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도록 지도한다. 법의 준엄성과 민주 시

75) 참조 (부록-4)

76) 참조 (부록-5)

민의 역할을 설명한다.

<표 7> 재량활동 과정을 통한 학급 자치활동의 연간 계획

차시	활동 주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료	비고
1	설문지 조사	설문지 조사의 취지 설명(학부모, 학생)	설문지	조사 활동
2	학급회의 개최(학급의 규칙 정하기)	각 학급의 규칙 제정 설명(다양한 의견 수용)	학급자치규정이 학교교칙에 어 긋나지 않도록 지도	토론문화 형성
3	학급회의(학급의 규칙 재 평가)	학급의 여건과 취지 에 맞게 규칙 제정	"	"
4	학급 자치법원 개최 연습	법원 운영법 설명 및 좌석 배치	제 8학년 법원 의 조직	법원의 조직과 구조
5	제 1회 학급 자치법원	역할 학생 지도, 운영방법 지도	형사소송법의 원고, 피고, 판 사 등	형법, 소 송절차법
6	제 2회 학급 자치법원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력을 지도	"	"
7	제 3회 학급 자치법원	자율적인 자치법원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법규정 적용 토론문화 형성	법문화, 토론문화
8	설문지 조사	질서, 의식의 변화를 설문지 조사	설문지(학부모, 학생)	법질서 의식변화
9	설문지 조사 분석	법 교육과 학급운영 에 참고자료 활용	조사 분석된 설문지	자치법원 전,후 분석

2. 학급 자치법원 운영

가. 학급 자치법원의 교육적 의의와 효과

학급 자치법원의 표면적인 목적은 일련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어느 것이 규정에 위반되고, 어느 것이 자유로운가를 결정토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학급 자치법원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의 원칙, 법적용 체제, 입증의 기준, 법적 절차의 핵심을 형성하는 문제, 사건관련 법률조항, 법적 쟁점들을 판단토록 하여 법적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⁷⁷⁾

이와 같이 재판 형식은 사회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법률관계의 모든 기능들을 가르친다. 법적 사건을 통해서 법적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함양시키고, 학생들은 폭넓은 시각에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이를 통해 법 교육의 대안적인 문제해결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협력과 타협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우리는 학교 생활 외의 일상 생활에서도 각종 법적 분쟁을 겪게 된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양측은 모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와 증거를 통해서 강하게 논쟁한다.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사건의 두 측면의 경험은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고, 이것을 법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볼 때 재판 형식의 교육적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⁷⁸⁾

77) 금정중학교, 앞의 책, p.43.

78) Anderson, C. C., *What is LRE*, American Bar, 1989, pp.235-253.

(1) 학급 자치법원의 교육적 의의

이상과 같은 논급을 토대로 학급 자치법원의 교육적 의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⁷⁹⁾

첫째, 법적 지식과 관련된 측면으로는 재판 구성 인사 이해(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원고, 피고, 서기 등)와 재판 절차 이해(법 적용 및 집행 절차 이해),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중요 용어 이해 및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법적 기능과 관련된 측면으로는 재판 구성 인사의 역할을 직접 현해 보고,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법적 문제해결 기능을 익히고, 법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분석력을 기를 수 있으며, 법적 지식을 활용한 주변의 법 문제를 적용하거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재판 과정(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비판적 사고와 법적 분쟁에 대한 종합적 판단 능력이 생기며, 법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협동심과 리더십 함양)

학습자들에게는 참여의식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며 흥미롭게 수업을 하게 한다. 그리고 언어 구사력, 표현 능력, 쓰기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셋째, 법적 가치·태도와 관련된 측면으로는 재판의 진행을 위해 구성되는 인사들에 대한 존중감 및 자아 존중감이 형성될 것이고, 각자 맡은 역할 수행을 통한 현실감 있는 감정이입 효과도 기대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보장 수단으로서 재판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법 체계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노력이 배양되고

79) 이대성(1999), “모의 재판 적용을 통한 중학생의 법적 기능 신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7.

준법 정신을 생활화 하게될 것이다.

(2) 학급 자치법원을 운영함으로써 수업에 기대되는 효과

(가) 법적 가치·태도 명료화

학생들은 법 교육을 통하여 단지 법에 관해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또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각자 자신에 대한 가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즉 학생들은 법 관계 자료의 내용과 그 본질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과 스스로에 관계되어 있는 가치 갈등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고취되어야 한다.

법적인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얽혀 있는 사회문제와 가치 갈등을 검토하고 그 갈등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는 대안을 확인하여 민주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실현 가능하며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란 양극단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의 어느 점에 존재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권리와 그 상대방의 개인적 욕구, 권리와 그에 대한 책임, 자유와 평등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보도의 책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학급자치법원은 이러한 법적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정하고 재판의 진행과정 속에 지열한 논쟁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학생들은 비로소 우리사회의 견해와 가치에 관련한 자신의 개인적 가치 및 태도를 파악하고 명료화시키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나) 법적 정보 획득 및 활용 기능

학생들이 생활하는 그들의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사회 집단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은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상

호 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그 법적 문제와 관련된 여러 법적 자료들 속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종합, 분석, 평가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힐(Hill)이 사회과 학습의 두드러진 특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다고 하였듯이,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 주변에 널리 산재해 있는 자료들을 교실로 가져와서 학습에 이용하여야 한다. 학급 자치법원은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문제에 활용함으로써 생동감 있고 흥미 있는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정보 획득 및 활용 기능을 지닌 학생은 법전의 조문을 이용하여 정보를 법적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법적 정의를 사용하여 정보를 분류하고, 도표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법 관련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건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정보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⁸⁰⁾

(다) 비판적 사고력 신장

학급자치법원의 법적 쟁점에서 서로 논쟁하는 토론 학습 활동은 중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켜 주며,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학급자치법원의 실시가 학급 구성원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는 학급자치법원의 형식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교사는 사전에 학급자치법원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토론이 진행되면 학급 전체가 그 상황에 맞게 진행되도록 적절한 지도를 해 주어야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⁸¹⁾

80) 이대성, 앞의 논문, p.27.

81) 박강용(2000), “쟁점 중심 사회과에서 패널리스트 대의 토론 학습과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4-77.

학급자치법원 과정의 토론 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사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속의 학습은 단순히 교사의 설명을 듣고 받아 적는 수동적인 학습보다 효과적이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도 부합되는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논리성과 추론 능력과 논리적 사고이다. 그 중 비판적 사고는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우열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인데 기능보다는 능력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기능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 심리적, 생리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힘과 태도 및 성향까지 포함하는데 학습을 통하여 길러질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 학습 중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토론 학습인 것이다. 현재 학교 교육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교사의 일방적인 학습지도 및 학습자의 수동적 학습태도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학습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⁸²⁾

(라) 법적 문제 해결 기능

현대 사회를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법 개념이나 법 규범에 대한 이해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적 지식인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은 기존 법 지식보다는 새로운 법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판단력, 미래 예측능력 등과 관련된 법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주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사회의 주어진 범주 안에서 객관적, 비판적,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미래의 시민들은 이를 위해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마음가짐이나

82) 고재영(2002),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 학습 프로그램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0.

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념,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 믿을 만한 출처의 자료 사용, 증거와 자료 제시, 증거의 질과 사고력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법적 문제해결능력과 이를 통한 비판적 사고 기능은 법적 문제해결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어지고 획득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⁸³⁾

나. 학급 자치법원의 운영

(1) 학급 자치법원 운영의 목적

학교의 제반 교칙에 위배된 경미한 사항이나, 각 학급에서 미리 정해진 학급 자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자치적으로 판결하는 과정이다. 이미 교내에서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는 선도부나 학생회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을 학급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학생 자치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선행을 장려하고 비도덕성 내지 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줄여 나가며,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고 준법 정신을 함양하여 밝고 명랑한 학교와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학급 자치법원을 운영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⁸⁴⁾

첫째, 밝고 명랑한 학교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자율성을 기른다.

둘째, 자치법원을 통해 법의 필요성과 법원의 운영 방법을 알게 한다.

셋째, 미래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 정신을 함양하게 한다.

넷째, 집단 생활에서 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한다.

(2) 학급 자치법원의 구성

83) 이대성, 앞의 논문. p.28

84) 금정중학교, 앞의 책, p.43.

(가) 학급 자치법원

제 8학년 교과서 ‘사법의 의미와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부분이다. 교과서에서는 재판의 종류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구별,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구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는 학급 자치법원도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위치 즉, 법원의 심급 제도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방법원 형식이다. 여기에서는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위반에 대하여 자율규정을 제정하여 지키고 자치적으로 법원을 운영하여 법 교육의 대안수업으로 활용하며 학생들의 토론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급의 단결력을 기르며, 사전에 일탈 행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나.) 학급 자치 법원의 조직

학급 자치 법원은 학급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 역할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다. 재판은 법적 사건(학교에서의 교칙위반)이 발생되면 이것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학급 자치 법원은 학급의 조직 기구표에 의해 그 역할이 정해진다.⁸⁵⁾

① 판사 : 학급의 실장이 맡으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정해진 규칙의 논쟁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에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법정 역할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담당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결이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주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 : 학급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 부실장과 생활부장이 맡는다. 검사는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교칙과 학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적발하고 일지에 적어 두었다가 학급 자치 법원이 열리는 요일

85) 박종국 외 3인(1999), 『법학개론』, 서울: 동방도서, p.291.

에 학급원이 볼 수 있게 공개한다.

③ 변호사 : 피고에 해당하는 학생이 임의로 정한다.

자기에게 변론을 가장 잘 해 줄 수 있는 학생을 피고에 해당하는 학생이 스스로 정한다. 이것은 일반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같다.

④ 법원서기 : 학급의 총무가 맡으며 학급 자치 법원 일지에 기록을 해야 한다. 자리 배치 및 준비를 한다.

⑤ 배심원 : 미국식 법원의 형태를 도입한 것으로, 학급에서 제정된 규칙에 의해 학급 구성원이 학급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학급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⁸⁶⁾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 법원서기를 제외한 학급구성원을 배심원으로 한다.

⑥ 피고 : 교칙을 위반했거나 학급에서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여 학급일지에 기록된 학생으로 임의로 변호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다) 학급 자치 법원의 운영도

학급 자치법원 판사 역의 학급 실장이 제 몇 회 학급 자치법원의 개최를 선언하면(개정 선언) 재판이 진행되고, 검사가 오늘의 사건에 대하여 학급 일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상 없는지 피고 학생에게 확인한다. 판사 학생은 변호인과 검사 학생에게 균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때부터 변호인과 검사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판사는 조정 능력 필요), 마지막으로 피고의 진술을 들은 후, 배심원의 심의를 거친다. 판사는 배심원의 질의를 들은 후 피고의 벌칙을 정한다. 그리고 배심원의 무기명 혹은 거수로서 벌칙의 경중을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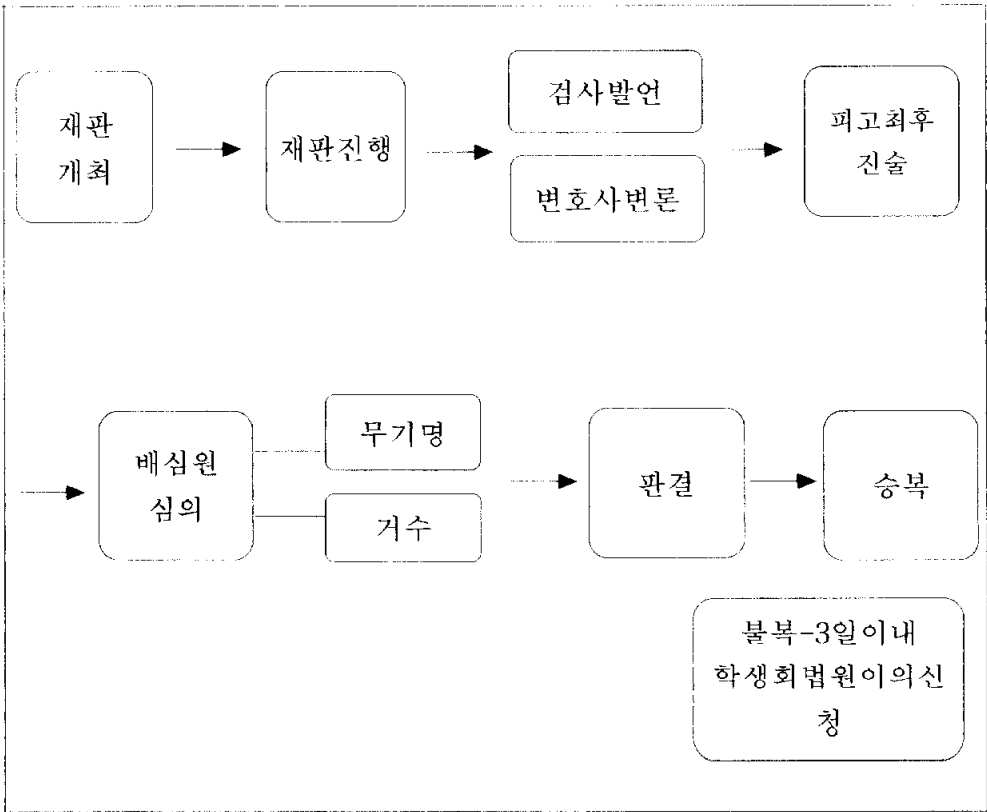
86) 사범연수원(2002), 『미국 형사법』, p.4.

“배심 재판 제도”는 판사와 보통 12인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으로, 배심원은 사실 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고, 판사는 법률 관계에 관한 판단을 함으로써 상호 협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 절차

형식상 법원의 심급 제도를 준수하여 학급자치법원에 불복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해당하는 학생회 대의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학급 자치법원 운영도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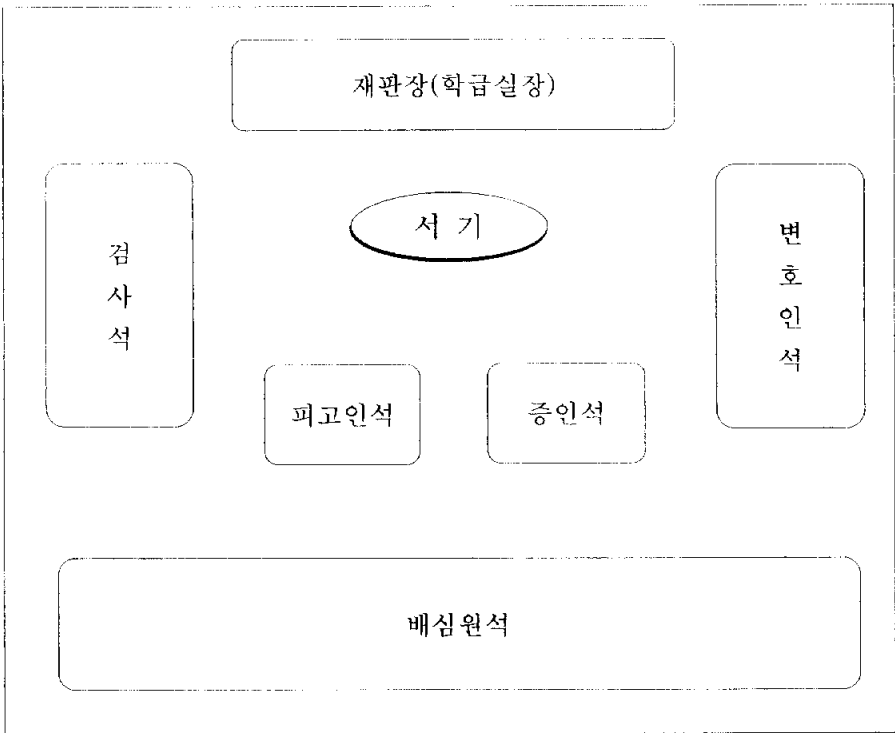
(라) 학급 자치법원의 배치도

학급 자치 법원은 학급에서 의식을 아래와 같이 배열하고 법원에서 진행

87) 금정중학교, 앞의 책, p.44.

하는 절차를 학급에서 진행한다.

<그림 4> 학급 자치법원 배치도⁸⁸⁾



(3) 학생회 자치법원

(가) 학생회 자치법원

고등법원에 해당되며 교칙에 위배된 중대한 사항이나 학급 자치법원에서 이의 신청된 사안을 중심으로 법원을 개최한다.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법원을 운영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이의 신청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88) 금정중학교, 앞의 책, p.45.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질서 있는 학교를 학생회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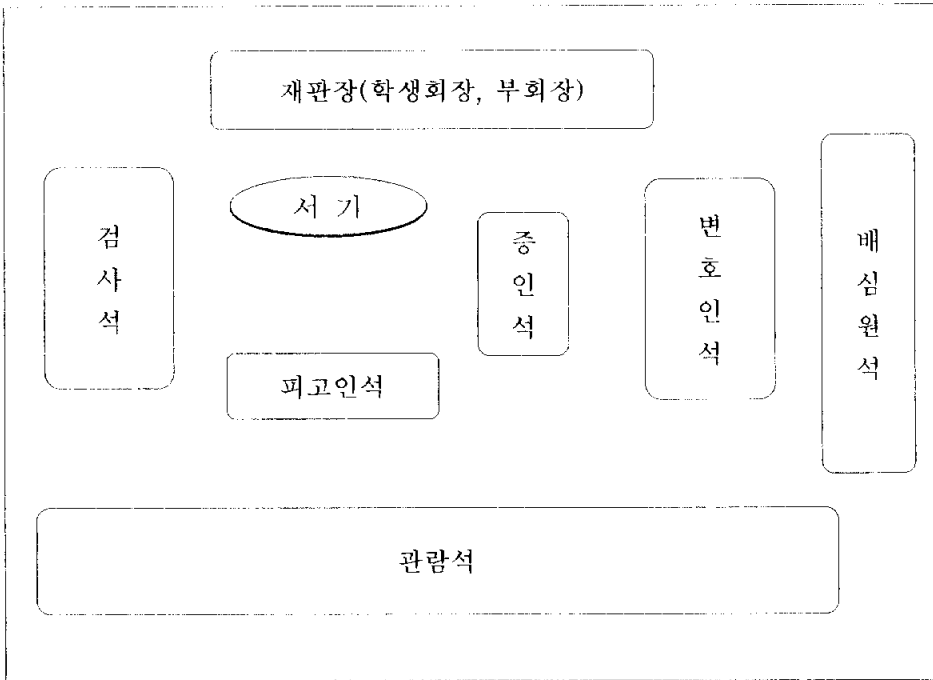
(나) 학생회 자치법원의 조직

학생회 법원의 재판부는 학생회장 및 학생회 부회장 2인으로 구성하며, 검사는 생활부장, 선도부장이 맡으며 변호사는 피고학생이 선임한다. 그리고 배심원은 학생회 위원회 중 역할을 맡지 않은 위원으로 한다. 역할은 학습자치법원과 같다. 학생회 자치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시에는 대법원격에 해당하는 위원회 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다) 학생회 자치법원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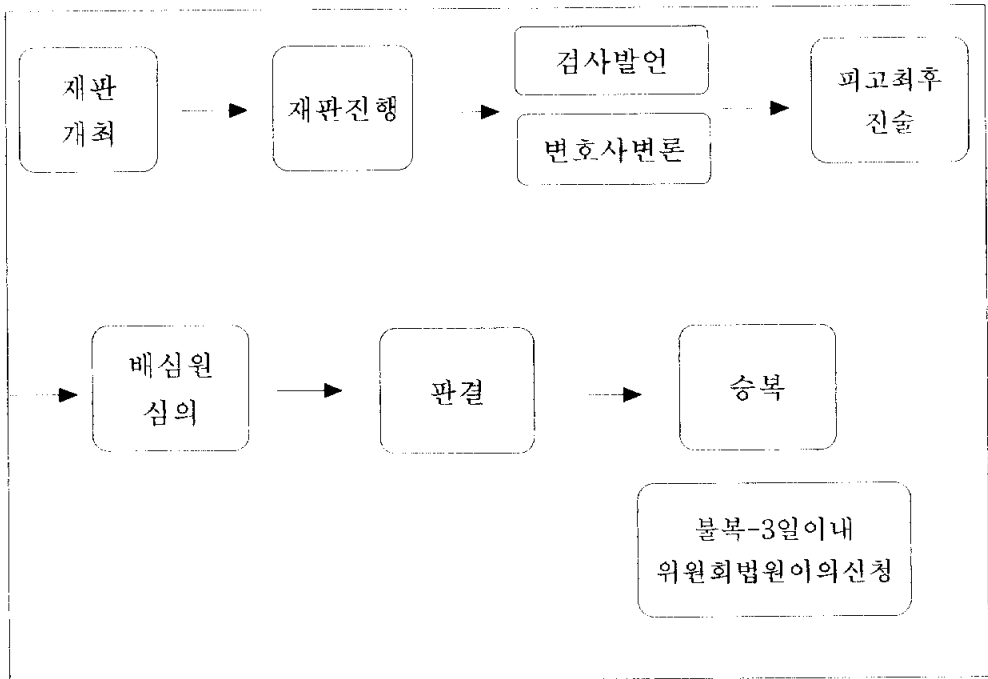
학생회 자치법원은 심급 제도를 맞추기 위하여 정해지며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중 있게 진행한다. 운영 방법은 학급 자치법원과 동일하다.

<그림 5> 학생회 자치법원의 배치도



(라) 학생회 자치법원의 운영도

<그림 6> 학생회 자치법원의 운영도



(4) 위원회 법원

(가) 위원회 법원

법원의 심급 제도로는 대법원에 해당되며 학생회 자치법원에서 이의신청한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구성은 교감 및 각부 부장, 학생부 징계 담당교사, 피고 학생의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결정사항은 학교 징계 규정에 준하며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학생회 법원으로 회부한다. 가능한 모든 문제들이 학생회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위원회 법원의 조직

위원회 법원은 교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와 피고 학생의 담임으로 구성이 되며 실무는 학생 생활부장이 담당한다. 학생회 자치법원에 불복하고 위원회 법원에 이첩된 건에 대하여는, 심의 토론한 내용을 받

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회 자치법원으로 통보하고, 학생회 자치법원도 학급 자치법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학급 자치법원 규정 제정

학급 자치법원 규정은 상위의 법 개념인 학교의 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각각 적어내게 한다. ② 학급에서 각자가 기록한 내용을 종합해서 순서를 정한다. ③ 그리고 학급에서 토론을 거쳐 학급 규정으로 채택할 것은 기록하고, 중복되거나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한다.⁸⁹⁾

각 학급에서 공통적으로 학급 자치 법규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자치법규가 있으면 편리하다. 학생회의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면 각 학급에서는 이 규정을 모델로 삼아 학급에서 정하게 되면 통일을 기할 수 있다.⁹⁰⁾

법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것을 서로의 합의 하에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 이 규칙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간단한 의식을 갖는다면 형식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효과가 더 증대될 것이다.

(6) 학급 자치법원 운영일지 작성

학생들이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지키지 못한 개인적인 생활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학급 자치법원을 개최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학급 자치법원이 개최되어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고, 학급의 일탈 행위도 근절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에서 발생한 행위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열람이 가

89) 예시문 참조 (부록-2)

90) 예시문 참조 (부록-1)

능하게 하여야 한다. 학급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점수화 하거나 상·별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⁹¹⁾

(7) 학생 자치법원의 운영 결과

학생들의 법 교육 실현과 민주 시민의식의 함양은 경험 위주의 체험 학습을 생활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학급 자치법원의 운영은 현실감 있는 법 교육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생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향상이 있는지는 설문지를 조사하거나, 학급 분위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기록으로 남기거나 숫자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조사나 쪽지 조사를 하면 지금까지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8>학생 자치법원 실시 이후 준법 정신 및 민주 시민의식 변화

영역	학급 자치법원 운영 전	학급 자치법원 운영 후
준법		
절서 의식		
공중 도덕		
자율 성		

91) 예시문 참조 (부록-3)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교사 중심의 법 교육 수업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의 법률 지향적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법의식을 함양시키고, 법률적 지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대안적 교수-학습 방법을 탐구하였다.

먼저 법의 개념과 법의 어원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법의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을 살펴봄으로써 법의 이념에 대하여도 언급하였으며, 동·서양의 법문화를 알아봄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다.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의 법 교육 단원인 제 8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했으며, 현재 법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 교육의 실현을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사회교과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교사 중심의 주입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⁹²⁾

이런 점에서 중학교의 법 교육의 대안적 수업인 학급 자치법원은 교육적 효과성과 실천적 연구성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곧 법치주의 사회이므로 모든 개인은 그 인격의 존엄성

92) 교육인적자원부(200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p.27.

과 가치의 실현, 기본적 인권의 보장 등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법 교육은 학생들의 법적 지식, 법적 기능, 법적 태도를 종합적으로 발달시켜 개인적·사회적 법적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 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이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 단원의 교육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을 통한 법적인 사고력을 신장하고 법에 대한 기능, 태도, 지식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먼저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 1절에서는 우리 사회에 법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금의 준법의식 결여나 범죄의 흉포화를 예방하는 기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지금까지 교육했던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대안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제 2절에서는 법에 대한 개념 및 어원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동·서양의 법 문화를 알아봄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다.

법 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을 나열하고, 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법 교육의 원리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법 교육의 목표 정립으로서 사회과의 일반 목표는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법 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법적 기초 소양과 사고력을 지닌 시민육성이라는 것과 법 교육의 법의식 신장 방안 등을 나열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법 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

하면서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고, 제 8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8학년 교과서의 내용에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질서의 유지, 복지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이념과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법적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 절차, 사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정당한 권리 행사와 준법의 자세를 기르도록 했는데, 이러한 방대한 양의 학습 과정에 비해 수업 시수는 8시간으로 배정하였다. 이 시간으로는 심도 있는 수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 4장에서는 학급 자치법원의 실제 적용 문제를 다루었는데,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재량활동을 통한 학급 자치법원의 운영과 사회과 수업 시간을 이용한 활용 방안을 기술하였다. 사회과 수업을 이용한 학급 자치법원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반면 법적 가치와 태도의 명료화, 의사 결정 능력의 제고,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창의적 재량활동을 이용한다면 민주 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지역,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범 교과 학습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대안적 교수-학습 방법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이미 결과까지 나와있는 부분을 재차 학습 과정화 한 것인데 반하여, 본 학급 자치법원은 규정을 만드는 것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든 단계가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관계의 용어와 법원의 구성, 법원의 각 심급 제도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해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에 학급 자치법원의 실행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제언

보다 효과적인 학급 자치법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지도 교사의 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대안 학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도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방식을 탈피하여 학습자 위주의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겠다.

둘째, 지도 교사의 지도 조언이 필요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을 하지 말아야겠다. 지도 교사는 학생들의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너무 많은 개입을 하게되면 학생들의 의지가 부족해지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셋째, 학급 자치법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나 횟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학급 자치법원은 토론이 많아지는 부분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맞춰 실시하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건을 모아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넷째, 학생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야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학급 자치법원을 개최하였을 시에 실제 심문을 하는 학생과 심문을 받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적대시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상호간의 자존심을 해치는 언행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되면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요소들을 참고하여 학급 자치법원을 운영한다면, 다른 대안적인 교수-학습 방법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법 교육 방안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학급 자치법원을 활용한 대안적 법 교육 방법의 효과를 단 시간

의 실행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교육인적자원부(2001),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재(Ⅳ)』

교육부(2000), 『특별활동·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검정(2004), 『중학교 사회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교육인적자원부 검정(2004), 『중학교 사회 2학년 교과서』, 금성출판사.

김철수(1993), 『헌법개설』, 서울: 박영사.

류인모(1999), “한국인의 정서와 법치”,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집』
제2집

박병호(1992),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재운(1996), 『법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종국 외 3인(1999), 『법학개론』, 서울: 동방도서.

배종대, 이상돈 공저(2001), 『형사소송법』, 서울: 홍문사.

부산광역시교육청(2003-9), 『제7차 교육과정의 길라잡이』.

사법연수원(2002), 『미국 형사법』.

사회과교육연구회(1988), 『사회과 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손봉호, “민족통일과 민주 시민 교육”, 『사회과 교육』, 제 14집.

송광섭(1998), 『법학원론』, 서울: 유스티니아누스 출판사.

안성조(1993), “시민정신의 함양을 위한 지방자치혁신”,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제4호, 서울: 관학행정학회.

양승두(1982),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
법문사.

- 이문용(1994), “목소리 크면 득보고 법 지키면 손해본다”, 『한국인』, 13권 9호,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 전숙자(2001),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차하순(1991), 『서양사 총론』, 서울: 탐구당.
- 최종고(1991), 『법학통론』, 서울: 박영사.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1991), 『신법학개론』, 서울: 법문사.
- 하봉규(2002), 『한국 정치와 현대 정치학』, 부산: 세종출판사.
- 한견우(1992). 『법학개론』. 서울: 신영사.
- 한견우(1999),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서울: 신영사.
- 한국교원대학교(1997),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 홍기갑(1996), 『신헌법원론』, 서울: 도서출판 어화.
- Charles E, (1975), *Law in American Society Foundation*, Merrile Publishing Company.

<논문>

고재영(2002),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 학습 프로그램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창현(19997), “준법의식의 저해요인과 제고방안” ,21세기 <여름호>.

권병화(2000), “사례 중심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통한 법적 기능 신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만기(1996), “중학교 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원규(2000), “법의 이념과 사회정의”,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김이숙, 2002. “중학교 법 교육의 실태와 교수-학습 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문인화(2001), “초등 사회과 논쟁학습이 의사결정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
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강용(2000), “쟁점 중심 사회과에서 패널식 대의 토론 학습과 비판적 사
고력의 신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산금정중학교(1999),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민주시민 의식 함
양”,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안향숙(2003),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중학교 국제이해교육의 증진 방
안”,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오관중(2001), “중등학교 법 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유백렬(2002), “사례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법교육이 법의식 신장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p 2)

- 윤소연(2002),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법 교육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대성(1999), “모의 재판 적용을 통한 중학생의 법적 기능 신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2001), “중·고등학생들의 준법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 최인화(1992), “법 교육 과정의 적정성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한은경(2002), “판례를 통한 법적 쟁점 수업의 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야후 대백과사전 (<http://kr.yahoo.com>) .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부록-1>

학생회 자치법원 규정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학생회 자치 규정을 제정하여 근본 규칙을 만든 다음 그 모델을 기준으로 각 학급 자치회에서 그 학급에 맞는 규정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제 1 조 (목적)

○○중학교의 학생으로서 등·하교 및 교내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칙에 위배되었더라도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교칙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 자치회에서 토론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 능력 및 토론 문화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준법 정신 함양과 민주시민 의식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법원의 종류)

1. 학급 자치법원
2. 학생회 자치법원
3. 위원회 법원

제 3 조 (구성)

1. 학급 자치법원에는 실장이 재판장이 되고, 부실장과 생활부장이 검사가 되며, 변호사는 피고 학생이 선정한다.
2. 학생회 자치법원에는 학생회장과 학생회 부회장 2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며, 선도부장과 생활부장이 검사가 되며, 변호사는 피고 학생이 선정한다.
3. 위원회 법원에는 교감 및 각부 부장교사, 생활지도부 징계담당 교사, 피고 학생의 담임교사로 구성된다. 최종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 자치법원과 학급 자치법원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 4 조 (학급 자치법원의 개최)

1. 각 학급 규정을 위반할 때
2. 선도부, 학교 자율 정화위원회, 학생회,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에 적발되어 통보된 경우
3. 학급 자치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학생회 자치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조 (학생회 자치법원의 개최)

1. 각 학급의 자치법원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2. 생활지도 담당 부서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을 때
3. 학생회 자치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위원회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 법원의 개최)

1. 학생회 자치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교칙에 의하여 징계해야 할 사항

제 7 조 (운영)

1. 학급회, 학생회를 통하여 스스로 생활 규칙을 제정하여 준수한다.
2. 학급회, 학생회에서 제정한 규칙은 교칙의 범주를 넘을 수 없다.
3. 학급 자치법원의 개최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긴급 사안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학급회의 시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학급의 긴급 사안에 대하여는 개최하는 학급에서 결정하며, 학교 전체의 자치법원 개최는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개최 1주일 전에 각 학급에 전달한다.
5. 각 학급회나 학생회에서의 학생 자치법원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운영 방식은 법원의 심판 절차를 따른다.
6. 검사 학생이나 변호사 학생이 피고 학생 심문 때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재판장 학생은 피고 학생의 인격에 손상이 없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7. 모든 법원의 운영은 정해진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각 학급의 담임교사는 회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 8 조 (각 학급의 결정 기준) - 각 항의 세부 규정 내용은 학급에서 결정

1. 학급에서 정해진 등교시간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 - 교실 청소 2일 이상

2. 학급에서의 단순한 폭력 - 반성문 제출 및 교실 청소 3일
3. 3회 이상 각 과목의 과제물을 미제출하여 학급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교실청소 1일 이상
4. 학급의 비품을 훼손한 학생 - 의도적인 경우에는 변상 후 화장실 청소 1일
5. 실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상담 지도 후 특별 구역 청소 2일 이상
6. 주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주변 학생 - 주변 1주일 연장
7. 청소를 상습적으로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는 학생 - 벌 청소 3일 이상
8.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하는 학생 - 청소 1일 이상
9. 두발, 운동화, 실내화 위반을 2회 이상 지적 당한 학생 - 청소 1일 이상
10.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여 선도부나 학생 정화위원회, 학생회,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에 적발되어 각 학급으로 통보된 학생 - 반성문 5회 이상
11. 학교에 불법 게임 CD나 불량만화 등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하다가 선도부나, 학생 정화위원회, 학생회,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에 적발되어 통보된 학생 - 화장실 청소 3일 이상
12.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아 학급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상담교육 후 반성문 제출

제 9 조 (학생회 결정 기준)

각 학급 자치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심의하여 배심원과 협의 후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의 세부 사항은 배심원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 | | |
|----------------|-----------------|
| ① 교내봉사 3일 - 5일 | ② 교내봉사 6일 - 10일 |
| ③ 교외봉사 1일 - 3일 | ④ 교외봉사 4일 - 7일 |

제 10 조

1. 학급 자치법원에서 판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회 법원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이의는 불복할 수 없다.
2. 학급 자치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은 학급 총무가 정해진 서식에 기록하며 판결문은 학급에 게시한다.
3. 이유 없이 자치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학생은 교칙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월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법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학생의 인격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우리 학급은 학급 스스로 제정한 규정을 잘 지키며 즐거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 각 개인 스스로 노력을 다한다. 모든 생활내용은 학급실장, 학급 부실장 및 생활부장이 학급 생활일지에 기록하여 누계화 한다. 기록의 내용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인정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치 규정에 따른다

우리들의 서약

1. 우리 스스로 제정한 자치 규정을 잘 따르며 지킨다.
2. 학급의 밝은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3. 친구들간의 우애를 지키며 서로를 이해하며 돕는다.
4. 학급에서의 집단따돌림 및 폭력행위는 절대로 없도록 한다.

1. 이유 없이 학급에서 정한 등교시간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 - 하루 중 일 청소 도구함 청소
2. 학급에서의 단순한 싸움 - 서로 사과편지 쓰기. 운동장 청소하루
3. 3회 이상 과제물을 미제출하여 우리 학급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공개사과 후 유리창 청소
4. 이유 없이 학급의 미품을 훼손할 시 - 교실 청소 2일
5. 실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 교실과 복도 유리창 청소
6. 주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주변 - 주변 1주일 연장
7. 청소를 상습적으로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 교실 청소 3일
8.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하는 학생 - 매 시간 칠판 닦기
9. 두발, 운동화, 실내화 위반을 2회 이상 지적 당한 학생 - 교실 청소 2일
10.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여 선도부나 학생 정화위원회, 학생회, 학교 폭력추방위원회에 적발되어 각 학급으로 통보된 경우 - 학급 커튼 빨아

오기, 걸레로 학급 비품 닦기(3일)

11. 자습시간 소란해서 타 학생의 학습을 방해 한 경우 -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12. 학교에 불법 게임 CD나 불량만화 등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선도부나 자율 정화위원회, 학생회,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에 적발되어 통보된 경우 - 교무실 청소 1일
13.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아 학급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공개사과와 학급 청소 7일
14. 교실 바닥에 2회 이상 침, 가래, 껌 등을 뱉은 경우 - 3학년 복도 껌 제거
15. 교실 내에서 심할 정도로 장난을 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점심 시간 청소 2일
16. 창문 밖으로 행인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휴지를 버린 경우 - 공개사과와 운동장 청소 1일
17. 수업시간에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온 경우 - 우유배달 2일
18. 이유 없이 환경미화를 훼손한 경우 - 원상복귀 후 교실 청소 3일
19. 수업시간 선생님께 3회 이상 적발 당하는 경우 - 그날 청소 하루, 반성문 제출
20. 수업시간 2회 이상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아 지적 당하는 경우 - 반성문 제출, 소각장 청소 3일
21. 교실 내에서 휴지 및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공개사과 후 반성문 제출
22. 매일 선행학생을 선정하여 그 미담을 소개하여 타 학생의 본보기로 삼는다.
23. 반성문 제출은 학급 실장에게 제출하며, 규정을 통해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2회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학급법원을 개척하여 과중 처벌을 내린다.

〈부록-3〉 학급 자치법원 일지

재판일	년 월 일	장소	
사건개 요			
피고학 생의 주장			
검사 학생의 주장			
변호 학생의 변론요 지			
배심원 들의 심의			
판결내 용			

설 문 지

<부록-4>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평소 생활과 교칙 준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며, 학급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 집에서 학교까지의 시간 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0분 이내 ② 10분~20분 ③ 20분~30분 ④ 30분이상

3. 학생은 하루에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 이상

4. 현재 학생의 집안 분위기 사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아주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관적이다
⑤ 아주 비관적이다

5. 현재 학생이 본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싫망이다 ⑤아주 싫망적이다

6.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친숙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⑤ 아주 좋지 않다

7.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⑤아주 좋지 않다

8. 학생은 두발·교복 등 복장 상태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주 양호하다 ② 양호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량하다

9. 학생은 1주일에 교칙을 어느 정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0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그 이상

10. 학급에서의 적응도는 어떠합니까?

① 아주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⑤ 아주 좋지 않다

11. 학생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있다 ④ 아주 있다

12. 학생은 남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있다 ④ 아주 있다

13. 학생은 등·하교 길에 교통위반, 질서 등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있다 ④ 아주 있다 (많다)

14. 학생은 학급에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① 간부학생 ② 일반학생

15.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 신고를 합니까?

① 신고한다. ② 신고하지 않는다.

설문지 조사(학부형)

<부록-5>

1.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의 인격을 어느 정도 존중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2. 학부모님께서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성 교육을 얼마나 시키십니까?

-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3.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에게 거리 질서 지키기, 교통 신호 지키기 등의 교육을 얼마나 시키십니까?

-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4.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들에게 공부나 올바른 언행에 대하여 얼마나 강요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5. 자녀들이 학교 및 동료 집단에서의 의사 결정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6.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교나 학급의 일을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7. 학생회나 선도부의 활동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8.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거리에서 교칙이나 기초질서를 어느 정도 지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

9.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운영이 학생들의 민주 시민의식 함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소극적 ⑤ 매우 소극적